

약관규제 관계법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현 대 호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연구보고 2013-07

약관규제 관계법규의 체계화 방안 연구

현 대 호

약관규제 관계법규의 체계화 방안 연구

Study for Systematiz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tandardized
Contracts Act

연구자 : 현대호(연구위원)
Hyun, Dae-Ho

2013. 10. 31.

요약문

I. 배경 및 목적

- 오늘날 소비자와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시 대부분 미리 마련하여 둔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실질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
- 이 연구에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친화적 경쟁을 유인하는 것이 필요
- 여기서는 유럽연합, 미국, 독일, 일본과 비교하여 약관규제법 등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아울러 약관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별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법령의 선진화와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법체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함

II. 주요 내용

- 유럽, 독일, 미국, 일본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 소비자법(약관법)에서는 약관에 대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계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관련된 특별한 소송절차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과 분리하여 별도로 입법화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유일하게 약관에 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행정기관의 역할과 행정규제가 매우 발달되어 있는 특성을 볼 수 있음

○ 우리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으로 ① 약관규제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 ② (가칭)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편입하는 방안, 그리고 ③ 민법으로의 편입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수 있음

□ 현행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관련 판례에 비추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일부 조항의 모호성이 문제되어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특히, 표준약관 등의 보급에 있어서 정부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향후 사업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기능 등을 강화하는 것도 필요함

□ 분야별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약관(또는 표준약관)은 필요에 따라 규정되어 관련 분야에 대체적으로 적절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차별화되어 있어서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 있음

Ⅲ. 기대 효과

- 정부 및 국회에서 약관 법령의 개선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정부의 표준약관 등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집행시 기초 자료로 활용

▶▶ 주제어 : 약관, 표준약관, 소비자계약, 법률, 금지명령

Abstract

I . Purpose and Background

- Standard-form contracts are a common feature of commercial relationships.
 - When concluding a contract, there is no chance of free agreement to decide the contents of contract by forcing the person concerned to decide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which is drawn up in advance in compliance with the unilateral person.
- This research paper is focused on pointing out the problem of regular transaction stipulation in the position of the general consumer to protect the consumer because of emerging in the instance frequently that force the consumer to receive unjust disadvantage owing to the immense use of regular transaction stipulation and researching a problem about contents control method and effect of unjust stipulation.

II . Summary

- The currently effective Law on Consumer Protection and the Civil Code implemented the regulation of the consumer pro-

tection issues. The developments of consumer protection in the EU,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are based on a critique of formal concepts of contract law. Those laws have been harmonized with the main EU consumer protection legislation. Also, the Civil Code gives a right to the consumer to ask a court to declare unfair terms void.

- The Adhesion Contract Act of Korea regulates special law on adhesion contract, and in Korea, role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is emphasized.
- An improvement plan to the Adhesion Contract Act of Korea is as follows: ① method of entire revision, ② method of enactment and incorporation of Consumer Contract Law, ③ method of incorporation to civil code.
- With the rise of private sources for transnational commercial standards and practices, there is an opportunity for states to facilitate self-regulation in lieu of producing public substantive regulations. This approach seems to satisfy a well-established need for consumer protection without exacerbat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private contracts. Free market self-regulation, not state regulation, shapes a new concept of consumer protection law.

III. Expected effect

- Making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relevant adhesion contract laws and regulations
- Creating a base study in the making and implementing of the national policies of standard adhesion contract in the future

➤ **Key Words : Adhesion contract, Standard contract, Regulation of Standard Contrac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 Act, Injunction, Consumer Contract**

목 차

요약문	3
Abstract	7
제 1 장 서 론	15
제 1 절 연구의 목적	15
제 2 절 연구의 범위	16
제 2 장 약관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17
제 1 절 개 관	17
제 2 절 유럽연합	18
I. 유럽연합 입법지침의 성립 배경	18
II.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19
III.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입법지침	23
제 3 절 독 일	27
I. 개 요	27
II. (구)약관규제법의 폐지와 주요내용	28
III. 민법에로의 편입과 주요내용	32
제 4 절 미 국	33
제 5 절 일 본	35
I. 개 요	35
II. 소비자계약법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	36
III. 소비자계약법의 금지명령에 관한 주요 내용	40

제 6 절 시사점	45
제 3 장 약관규제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47
제 1 절 개 관	47
제 2 절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47
I. 약관규제법의 연혁과 시사점	47
II.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	53
III.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77
제 3 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89
I. 개 요	89
II. 단체소송의 주요 내용	93
III. 단체소송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	95
제 4 장 그 밖의 약관규제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97
제 1 절 개 관	97
제 2 절 그 밖의 약관(또는 표준약관)규제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	97
I. 약관의 사용을 권장(또는 권고)하는 유형	97
II.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의제 유형(건설기계관리법)	101
III. 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유형	102
제 3 절 그 밖의 약관규제법제의 개선방안	110
제 5 장 결 론	113

< 부 록 >

부 록 I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117

부 록 II 독일의 보통거래약관규제법 137

부 록 III 일본의 소비자계약법(消費者契約法) 157

참 고 문 헌 197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소비자와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시 대부분 미리 마련하여 둔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다.¹⁾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와 사업자는 계약 내용에 대한 실질적인 협상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6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여 ‘약관’이라는 일정한 형식을 갖춘 경우만을 대상으로 독립입법을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약관의 해석,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관청 인가 약관, 약관의 심사청구, 표준약관,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분야별로 개별법령에 따라 약관에 관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야에서 특별히 문제되는 입법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약관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관에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관련 법령의 해석이나 적용 등에 관련한 분쟁사례도 다수 나타나고 있다. 특히, 현행 약관규제법과 그 밖의 개별법령의 약관 조항에 따른 약관규제의 실효성과 적절성 등이 문제되고 있으며, 아울러 ‘약관’이라는 형식을 벗어나 ‘소비자계약’을 규율하려는 세계적인 입법추세와 부조화의 문제 그리고 약관에 관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간섭)로 인한 시장기능의 저하 등이 문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약관규제에 관한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친화적 경쟁을 유인하는 방안을 모색

1) 약관의 기능에 대하여는 권오승, 소비자보호법, 법문사, 2005, 132~133면 참조.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유럽연합, 미국, 독일, 일본의 약관관련 법제를 분석하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체계와 규율하고 있는 입법사항 및 정부의 역할(약관 규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약관을 도입하고 있는 분야별 법령의 체계화를 통하여 국가법령의 선진화와 글로벌 기준에 적합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연구의 범위는 유럽연합, 미국, 독일 및 일본의 약관에 관한 법제를 분석하여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령의 체계화와 그 내용의 개선방안을 살펴보는 것에 한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주요 외국의 입법현황과 주요 입법사항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제의 개선방안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에 관하여 지적된 문제점과 법원의 판례 등에서 약관규제법의 적용이나 해석을 달리한 경우에 입법개선이 필요한지, 그리고 관련 판례 등에서 새로운 입법사항(법령을 보완하는 해석, 즉 일종의 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례)이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제4장에서는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약관에 관한 입법례 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선별하여 그 현황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 2 장 약관규제에 관한 각국의 동향

제 1 절 개 관

통상 약관은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따라 미리 계약의 내용이나 조건을 정해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형태, 명칭, 범위에 상관없으며, 전자약관을 포함한다.²⁾ 사업자는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를 시도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한 정형화된 요건을 미리 마련해둔 다음 이를 모든 고객(소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려고 한다. 즉 약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나 제공을 위하여 미리 준비되어 있는 표준계약서를 통하여 계약을 획일적으로 체결하여 거래의 대량화와 보편화를 도모한다. 그런데 사업자는 약관을 이용하여 거래시에 발생할 위험을 모두 상대방 소비자에게 전가하려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자는 약관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이 미비하고 약관의 뒷면에 적힌 작은 문자로 이루어진 내용에 대하여 세세히 검토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이와 같이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내용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체결한 계약의 구속력이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 연구에서는 각국의 입법례에서 불공정한 약관을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세계적인 입법추세와 바람직한 우리나라 약관법규의 정비를 통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선진 각국의 입법과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정책수립과 법제개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자의 편의에 따라 유럽연합, 독일, 미국, 일본의 입법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³⁾

2) 전자약관의 계약편입에 관한 법률문제에 대하여는 김진환,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법학연구 제10집, 경성대학교, 2001, 46~58면 참조.

3) 영국은 불공정한 약관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 필요에 따라 ‘불공정계약조항법(Unfair Contract Terms Act)’을 1977년에 제정하였고, 이어서 1994년에 ‘소비자계약

제 2 절 유럽연합

I. 유럽연합 입법지침의 성립 배경

유럽연합은 1993년 ‘소비자계약에서의 불공정계약조항에 대한 입법지침(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을 제정하여 불공정약관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최저수준을 설정하였다.⁴⁾ 이 지침이 제안된 근거는 역내에서 서비스와 자본의 이동에 대한 장애물을 제거하고 회원국 사이의 법률의 차이가 큰 경우 분쟁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규의 조화를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조항을 제거하는 것이 부각되었다.⁵⁾

또한 유럽의회와 이사회는 1998년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입법지침(Directive 98/2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May 1998 on injunctions for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terests)’을 공포하였는데, 이 지침은 국경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거래행위에 대해서 회원국의 소비자단체가 다른 나라 법원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점과 유럽연합 회원국의 실체법에만 영향을 미치던 것에서 유럽공동체 회원국들의 민사소송법 등의 절차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의 불공정조항에 관한 규칙(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Regulation)’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자세한 것은 김동훈·김용재, 업종별 불공정약관 규제 관련 판례·심결례 연구 및 외국 약관사용 실태조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5.12., 41~45면 참조; 한기정,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2000, 288면.

4) 이 지침은 특정의 상황에 결합된 적용 영역이나 특정의 계약 유형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비자 거래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규제 기술면에서 다른 유럽연합의 지침과 같지만 형식면에서는 분명 진보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박영복, EU사법의 전개, EU연구 제3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62면 참조).

5)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최근 동향, 상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11면 참조.

II.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은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역내시장을 순차적으로 형성할 목적으로 조치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품,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이 경계 없이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소비자계약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이 크게 상이하여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시장에서 서로 달라져 경쟁의 왜곡이 야기된 것 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특히, 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고 자국 이외의 회원국 법률이 규율하는 계약에 따라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공동체) 시민을 소비자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조항을 제거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이 지침의 목적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조항에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칙을 통일하는 데에 있으며, 회원국 등의 강행법규 또는 국제협약은 이 지침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같은 지침 제1조).

둘째, 이 지침에서 ‘불공정조항’이란 ①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법적 책임을 배제나 제한하는 조항, ②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해 전부나 일부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행사하는 청구권과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귀속된 채권을 상계하는 선택권을 포함하여 매도인, 공급자 또는 그 밖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갖는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③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 공급 규정의 실현이 오로지 그의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에 따라 소비자를 구속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조항, ④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계

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액을 상환한 것을 규정하지 않는 반면,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매도인이나 공급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허용하는 조항, ⑤ 의무이행을 해태한 소비자에게 고액의 위약금 지불을 요구하는 조항, ⑥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는 계약의 임의해제권을 부여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 조항과 매도인과 공급자 자신이 계약을 해제한 때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할 금액을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귀속시키는 조항, ⑦ 중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합리적인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⑧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 부당하게 빠른 기한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⑨ 계약체결 이전에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소비자를 확정적으로 구속시키는 조항, ⑩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계약에 특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⑪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⑫ 계약체결 시 합의된 가격에 비하여 최종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상품의 가격이 물품 인도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매도인과 공급자가 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조항, ⑬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약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혹은 계약조항의 독점적인 해석권을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조항, ⑭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약정에 대하여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제한하거나 그 약속의 이행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조항, ⑮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그의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

자에게 모든 채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조항, ⑩ 소비자에게 보증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 없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⑪ 소비자로 하여금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재에만 따르도록 요구하고 소비자 측의 증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법률에 따른 입증책임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소송 기타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방해하는 조항을 말한다. 이 지침에서 ‘소비자’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자기의 거래, 영업 혹은 전문적인 직업의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하고, ‘매도인 또는 공급자’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영의 공시를 묻지 않고 자기의 거래, 영업, 전문적 직업에 관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같은 지침 제2조 및 별표 참조).

셋째, 이 지침 제3조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계약조항은 선의 요건에 반하여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⁶⁾ 조항이 사전에 작성되고 소비자가 그로 인하여 그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때, 특히 사전에 작성된 표준계약에 의한 계약일 경우, 언제나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조항의 특정 내용이나 어떤 조항이 개별적으로 교섭되었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계약이 사전에

6) 이 지침 제3조제2항은 ‘계약조항은 사전에 작성되었고 따라서 특히 소비자가 사전에 작성된 표준계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을 때에는 항상 개별적으로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약관은 사전에 작성되어야 하고 또 소비자가 그 내용에 영향을 행사할 수 없어야 한다. 이러한 약관의 개념정의는 독일민법이 약관개념 요소로서 ① 사전에 작성될 것, ② 다수계약에 적용될 것이 예정될 것, ③ 약관사용자에 의하여 제시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작성된 표준계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약관 조건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넷째,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은 계약이 체결된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일체의 사정과 그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그 계약의 전제가 된 다른 계약 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하고, 조항의 불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조항이 평이하고 명료한 용어로 서술되어 있는 한, 그 계약의 주된 목적물에 관한 정의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에 비추어 그 대가 및 보수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같은 지침 제4조).

다섯째, 소비자에게 제시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서면에 의한 계약인 경우 그 조항은 언제나 평이하고 명료한 용어로 작성해야 하며, 조항의 의미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같은 지침 제5조 참조).

여섯째, 이 지침 제6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 사용된 불공정조항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구속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한다. 만약 불공정조항 없이 계약이 계속될 수 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를 계속하여 구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소비자가 계약 준거법으로 비회원국의 법을 선택하더라도 회원국의 영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한,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일곱째, 회원국은 소비자와 경쟁자를 위하여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조항의 계속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들 수단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본국의 법률상 정당한 이해를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재판 또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의 적격이 있는 행정기관의 준거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여야 하고, 개인이나 단체가 불공정조항의 계속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법에 따른 법률적 구제는 동일한 일반계약조항 또는 유사조항을 사용하거나 권고하는 동일한 경제분야의 다수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개별적·연대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같은 지침 제7조).

여덟째, 회원국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조약에 상응하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8조).

아홉째, 이 지침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이 날 이후 위원회는 최소한 매 5년 마다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회원국이 채택한 국내법 규정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지침 제9조 및 제10조 참조).

Ⅲ.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입법지침

이 지침은 유럽연합 역내에서 소비자의 집단이익의 보호를 각국 간에 마찰 없이 보장하기 위해서 금지청구소송에 관한 회원국들의 법적·행정적 제 규정을 통일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다(같은 지침 제1조 제1항). 이 지침에서 제소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조직’이란 회원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고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를 지켜낼 수 있는 지위 또는 조직을 말한다(같은 지침 제3조). 이 지침은 이러한 조직으로 두 가지를 상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회원국 내에서 특별히 소비자의 집단이익의 보호를 담당할 자격 또는 지위를 가

진 하나 혹은 수개의 독립한 공적기관이고(같은 지침 제3조 a호), 다른 하나는 이 지침 제1조 제1항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집단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 회원국의 국내법 기준에 부합하는 조직을 말한다(같은 지침 제3조 b호). 따라서 회원국은 이 지침에 따라 국내법을 제·개정하는 경우 금지명령 소송의 당사자적격을 공적 기관에 부여하거나 소비자단체 등 민간기관에 부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양 기관에도 부여할 수 있다. 회원국은 자국 사정에 따라 금지명령소송의 원고적격을 공적 기관에 부여할 수도 있고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단체에 인정할 수도 있다.

이 지침은 여러 차례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명확성과 합리성을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 지침은 회원국과 유럽공동체 모두에서, 소비자들의 집단적 이익에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범위반의 경우 기한 도래 전에 미리 예방한다. 여기서 ‘집단적 이익’이란 범위반에 따른 손해를 입은 개개인의 누적된 이익 이외의 이익을 말하며, 이는 범위반에 의해 손해를 입은 개개인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지침은 불법적인 관행을 중단시키는 의도로 이 지침의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를 허용한다. 이들 관행은 종종 회원국의 국경 너머로 확대되고 불법적 관행의 효력이 발생하는 곳이 회원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불법적 관행을 중단시키고 역내 규정의 통일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이 지침은 관할권과 관련하여 국제사법과 회원국 간에 유효한 협약 상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조약으로부터 파생되는 회원국의 일반의무, 특히 역내시장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관련 규정들을 존중한다. 이 지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정함에 있어서 회원국은 독립된 공적 기관을 구성하거나 또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단체에게 제소권을 주도록 한다. 이 지침의 적용은 공동체의 경쟁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침은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할 목적으로 방문판매지침7), 소비자신용지침8), TV광고지침9), 패키지여행지침10), 불공정 소비자계약지침11), 원격계약지침12), 소비재매매 및 보증지침13), 정보 사회 전자거래지침14), 인체용의약품 광고지침15), 소비자원격금융서비스지침16), 불공정영업관행지침17), 역내서비스지침18) 및 시분할 소비자 보호지침19) 등에 근거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 소송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규 및 행정규칙 등을 조화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지침 제1조).

-
- 7) Council Directive 85/577/EEC of 20 December 1985 to protect the consumer in respect of contracts negotiated away from business premises
 - 8) Council Directive 87/102/EEC of 22 December 1986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consumer credit
 - 9)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 10) 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 11)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 12)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 13)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 14)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 15)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 16) Directive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2002 concerning the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 17)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 18)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 19) Directive 2008/1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anuary 2009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timeshare, long-term holiday product, resale and exchange contracts

둘째, 회원국은 ① 위반행위의 중단 또는 금지를 요청하는 적절한 약식절차를 청구하는 경우, ② 결정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형태로 공개하고 그 위반행위의 지속적인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③ 허가에 관한 경우에 법원이나 행정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지체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또는 국내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패소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국내법이 정하는 수혜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 관할 법원이나 행정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같은 지침 제2조).

셋째, 이 지침에서 책임기관이란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독립된 공공기관 또는 국내법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와 같이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회원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모든 조직 혹은 단체를 말한다(같은 지침 제3조).

넷째, 각 회원국은 그 회원국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회원국의 책임기관에게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할 법원이나 행정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같은 지침 제4조 참조).

다섯째, 회원국은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피고와 협의하거나 피고 및 금지명령이 청구된 회원국에 속하는 책임기관과 협의한 후에 이 절차를 개시하는 효력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책임기관과 협의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 요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위반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는 지체 없이 금지명령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같은 지침 제5조).

여섯째, 이 지침은 회원국이 국내에서 적격의 기관 또는 자연인에게 보다 광범위한 제소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존속시키는 것을 허용한다(같은 지침 제7조).

일곱째, 회원국은 이 지침이 범위 내에서 채택한 국내법 규정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지침 제8조).

제 3 절 독 일

I. 개 요

독일은 종래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민법의 일반규정, 즉 공서양속에 관한 제13조와 신의성실에 관한 제242조에 의한 불공정한 약관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시기를 거쳐서 1976년에 최초로 보통거래약관법((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1976), 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²⁰⁾ 이 법은 매우 체계적이고 소비자보호에 충실한 내용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어 왔으며, 1977년 4월 1일에 발효된 이후 여러 차례의 개정을 경험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독일 약관규제법의 개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첫 번째는 1993년에 유럽연합의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는 입법지침이 제정되어 약관규제법을 개정할 때였고²¹⁾, 두 번째는 약관규제법의 법형식적 측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온 것으로 2002년의 채권법 개정으로 민법에 편입된 때였다. 당시 민법전에 통합된 것은 특별법 형식의 소비자보호법령들과 약관규제법이었다. 민법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구) 약관규제법은 실체법적인 조항과 절차법적인 조항으로 분리되어 약관에 관한 실체조항은 민법 제305조 이하로 통합되었다. 금지명령에 관

20) 독일의 경우 약관규제법의 제정과정에서 커다란 쟁점으로 ① 상인 사이의 거래도 이 법의 적용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순전히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률로 할 것인가? ② 불공정한 약관을 규제하기 위하여 특별한 소송절차를 둘 것인가? 등이 논의되었다고 한다(자세한 것은 최완진,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531면 참조). 서독의 약관규제법 제정 과정에서 법정책적 측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은영, 서독의 보통거래약관법, 법조 제27집 제3호, 법조협회, 1978, 133~135면 참조.

21) 유럽연합의 지침에 따른 독일에서 약관규제법의 개정과 관련한 것은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최근 동향, 상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10~14면 참조.

한 절차적 조항은 부작위소송법(‘소비자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의 금지 청구의 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Unterlassungsklagen bei Verbraucherrechts- und anderen Verstößen)으로 분리되었다.

한편,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은 1996년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불공정한 조항에 관한 입법지침’을 수용하여 대폭적인 개정이 있었는데, 제5장 30개 조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제1장은 실체법 규정으로 총칙, 무효인 조항, 평가할 수 없는 조항의 금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제2장은 저촉법, 제3장은 절차, 제4장은 적용범위, 제5장은 관련규정 및 경과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II. (구)약관규제법의 폐지와 주요내용

이와 같이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은 제1장 실체법규정, 제2장 협의 규정, 제3장 쟁송절차, 제4장 적용범위, 제5장 경과규정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²²⁾, 이들 장 중에서 제1장과 제3장은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을 이해하고 개선방향을 구상하는 데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은 제1장(제1절 일반규정과 제2절 무효조항)과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실체법규정

(1) 일반규정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은 일반조항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약관의 개념정의와 관련하여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된 것으로 일방 계약당사자(제안자)가 타방 계약당사자에게 계약체결에 즈음하여 제시하는 일체의 약관조건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22) 독일의 약관규제법에 대한 자세한 연혁은 전삼현, 독일보통거래약관법과 유럽약관준칙에 관한 소고, 송실대학교 법학논총 제9집, 송실대학교, 1996, 181~183면 참조.

약관이 계약의 외관상 구분되는 별도의 구성부분을 이루는지, 계약증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것이 어떤 범위에 걸친 것인지, 어떤 서식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등을 문제 삼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조제1항). 다만, 계약당사자들 사이에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정한 사항은 약관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1조 제2항).

둘째, 약관은 약관사용자가 계약체결 시 상대방에게 알기 쉽게 명시하거나 확실히 눈에 띄도록 게시하여 약관 내용을 인식시킨 경우 또는 상대방에게 예견가능한 방법으로 약관내용을 인식시킨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구성할 수 있다(같은 법 제2조제1항 참조).

셋째, 약관의 조항, 계약의 외관 상 형태에 비추어 매우 이례적이어서 약관사용자의 상대방이 이를 고려할 수가 없었던 것은 약관의 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조).

넷째, 약관에서 개별적인 약정은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같은 법 제4조).

다섯째, 약관의 해석상 의문은 약관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같은 법 제5조).

여섯째,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구성 부분으로 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인 때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같은 법 제6조제1항). 다만, 이 경우 약관이 계약구성부분으로 되지 아니하였거나 무효이면 계약의 내용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해진다(같은 법 제6조제2항). 계약의 지속이 그 변경을 고려하여도 일방 계약당사자에게 예견불가능한 가혹한 결과를 가져 올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6조제3항).²³⁾

23) 자세한 것은 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최근 동향, 상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26면 참조.

(2) 무효조항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은 무효조항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법규정과 상위 하거나 또는 이를 보충하는 규정을 내용으로 갖는 약관 조항 중에서 약관규제법(제9조 내지 제11조)의 무효조항에 위배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한하여 적용된다(같은 법 제8조).

둘째, 신의성실에 반하여 부당한 약관의 조항은 약관사용자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같은 법 제9조제1항). 이 법의 적용을 회피한 약관 조항이 이 법의 근본이념을 본질적으로 해하거나 또는 계약의 특성에 비추어 약관사용자 상대방의 권리의무를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법 제9조제2항 참조).

셋째, 약관 중에서 ① 약관사용자가 청약에 대한 승낙이나 거절 또는 급부의 이행을 위하여 부당하게 장기이거나 불특정한 기한을 유보하는 내용의 조항, ② 약관사용자가 이행할 급부에 관하여 부당하게 장기로 하거나 불특정한 기한으로 유보하는 내용의 조항, ③ 약관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기의 이행의무를 면하게 하는 권리에 관한 합의 조항, ④ 약관사용자가 약정된 급부를 변경하거나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관한 합의로서 약관사용자의 이익만을 고려하고 계약상대방에게는 변경 합의를 예견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 ⑤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계약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표명되었거나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항, ⑥ 약관사용자의 중요한 의사표시가 계약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 ⑦ 약관사용자의 상대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물건의 사용·수익 또는 이행된 급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높은 보상 또는 부당하게 높은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

⑧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외국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10조).

넷째, ①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인도 또는 제공할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인상하는 조항, ② 약관사용자의 상대방에게 속하는 이행거절권의 배제나 제한하는 조항 또는 약관사용자의 상대방에게 속하는 유치권의 배제나 제한하는 조항, ③ 약관사용자의 상대방에게 속한 상계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항, ④ 약관사용자가 계약상대방에게 최고하도록 하거나 유예기한을 설정하도록 하는 법률상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 ⑤ 예정된 보상액이나 손해액이 통상 발생하는 감가를 초과하거나 또는 예정된 보상액이나 손해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에 대한 반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조항, ⑥ 약관사용자의 채무불이행, 이행거절 등 사유로 계약상대방이 계약을 해약하는 경우 계약별을 예정하는 조항, ⑦ 약관사용자의 중과실에 의한 계약위반 또는 약관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 ⑧ 약관사용자의 이행지체 또는 책임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에 계약상대방의 해약할 권리를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등의 조항, ⑨ 약관사용자의 일부 이행지체의 경우 또는 책임 있는 일부 이행불능의 경우 계약상대방의 손해배상청구나 계약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등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10조).

2. 소송절차규정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은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과 달리 금지명령에 관한 소송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약관에 대한 사법절차적 통제 또는 민간단체 등에 의한 자율적 통제를 활성화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 중에서 무효인 조항 등을 포함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는 부작위 또는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지청구 또는 취소청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단체(75명 이상으로 구성된 소비자단체 또는 상공회의소 등)만이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 참조).

둘째, 금지청구 또는 취소청구 소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영업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때에는 주소를 가지는 관할 구역의 주 법원을 전속 관할로 한다(같은 법 제14조제1항 참조).

셋째, 소송절차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소장에는 다툼의 대상이 되는 약관 조항의 문언과 그 조항에서 다투어지는 법률행위를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참조).

넷째, 이 밖에 이 법에서는 공청회에 관한 조항, 주문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관한 조항, 공표권에 관한 조항, 상급법원에의 이의 신청에 관한 조항, 통지에 관한 조항, 판결의 효력 및 소가를 제한(50만 마르크 불 초과)하는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III. 민법에로의 편입과 주요내용

독일은 (구)약관규제법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 거의 그대로 민법에 편입하였으며, 소송절차에 관한 부분은 부작위소송법으로 분리하여 입법화하였다. 독일의 경우에도 민법에 약관의 실체조항을 편입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종국적으로 민법에 편입하여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민법의 일반적인 계약으로 보았다. 즉 (구)약관규제법은 2001년 11월 26일의 채권현대화법(Schuldrechtsmodernisierungsgesetz)에 의하여 2002년 독일민법 제2장(채권관계의 법) 제2절(약관에 의한 법률행위상의 채권관계의 형성)에 편입되었다.²⁴⁾

24) 2001년 채권현대화법에서는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약관규제법 이외에도 통신수강자법 「Gesetz zum Schutz der Teilnehmer am Fernunterricht」, 방문판매법 「Gesetz über den Widerruf von Haustürgeschäften und ähnlichen Geschäften」, 소비자신용법 「Verbraucherkreditgesetz」, 주택의 정기이용권의 양도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Veräußerung von Teilzeitungrechten an Wohngebäuden」 등을 민법전에 편입시켰다.

즉 독일민법 제305조 내지 제310조는 약관규제법의 내용을 크게 변경하지 않고 수용하였으며, 대부분은 기존의 내용을 종합하고 부분적으로만 새로운 규정을 추가하였다.²⁵⁾

제 4 절 미 국

미국법에서도 계약체결과정의 건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계약내용의 공정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에서 커먼로상 비양심성의 원칙과 부실표시의 원칙이 적용되어 왔다.²⁶⁾

먼저, 일반원칙에 의한 규제로 부실표시(misrepresentation)라는 원칙을 들 수 있다. 부실표시의 법리는 계약법에서 일반적으로 요구하는 법리에 해당되는데, 부실표시는 상대방에게 오해를 유발하게 하는 허위표시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부실표시에 의한 계약은 일정의 요건하에 취소할 수 있는데, 리스테이트먼트 제164조²⁷⁾에서는 그 요건으로 ① 부실표시, 즉 사실과 다른 표시를 할 것, ② 당해 표시가 사기적 또는 중대한 것일 것, ③ 당해 표시에 기초하여 행위를 할 것, 즉 당해 표시를 신뢰할 것, ④ 신뢰가 타당할 것을 열거하고 있다.²⁸⁾

25) 독일 약관규제법의 역사와 채권법 개정을 통한 약관규제법의 변화에 대하여는 이병준, 독일 약관규제법 30년과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 1~9면 참조.

26) 미국의 약관규제법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한기정,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2001, 311~312면 참조.

27) § 164. When A Misrepresentation Makes A Contract Voidable

(1) If a party's manifestation of assent is induced by either a fraudulent or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by the other party upon which the recipient is justified in relying, the contract is voidable by the recipient.

(2) If a party's manifestation of assent is induced by either a fraudulent or a material misrepresentation by one who is not a party to the transaction upon which there-recipient is justified in relying, the contract is voidable by the recipient, unless the other party to the transaction in good faith and without reason to know of the misrepresentation either gives value or relies materially on the transaction.

28)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second) of Contracts §164(1981) Comment a.

다음으로, 조항별의 규제로 비양심성을 들 수 있다. 즉 미국의 경우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에 관하여 비양심성(unconscionability)의 원칙을 개발하여 적용하였는데, 이 원칙은 형평법에 기초하여 발달된 것으로 통일상법전(Uniform Commercial Code, UCC)과 계약에 관한 두 번째의 리스테이트먼트²⁹⁾에 수용되어 있다. 비양심성의 법리는 약관관계에만 특유한 법리는 아니지만 약관계약에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즉 약관 내용이 계약의 체결당시에 비양심적이라고 판단되면, 법원은 계약의 강제를 거부하거나, 비양심적 조항이 없이 계약의 나머지를 강제하거나, 또는 비양심적인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서 비양심적 조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비양심성의 원칙은 다음의 경우에 적용된다. 첫째, 비양심성의 법리는 법원에 의한 계약내용의 실제적 개입을 위한 수단에 해당된다.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양심에 반하는 계약에 대하여 그 집행을 거부한다. 이 원칙은 UCC §2-302³⁰⁾에서 독립된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둘째, 비양심성의 법리는 계약일반에 관한 일반조항적인 법리이지만 개개 조항의 유형에 대하여 규제를 가하는 경우에도 일방당사자에게 불리한 조항의 내용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리한 조항을 제시하는 측의 당사자가 체결과정에 있어서 당해 조항에 주의를 하는 것으로 규제가 나타난다. 예컨대, 동산매매에 관한 담보책임(warranty)에 한정하여 관련 규제를 열거하고 있다.

29)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second) of Contrac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79.

30) § 2-302. Unconscionable contract or Clause.

- (1) If the court as a matter of law finds the contractor any clause of the contract to have been unconscionable at the time it was made the court may refuse to enforce the contract, or it may enforce the remainder of the contract without the unconscionable clause, or it may so limit the application of any unconscionable clause as to avoid any unconscionable result.
- (2) When it is claimed or appears to the court that the contractor any clause thereof may be unconscionable the parties shall be afforded a reasonable opportunity to present evidence as to its commercial setting, purpose and effect to aid the court in making the determination.

즉 UCC §2-314³¹⁾에 있어서 상품성에 대하여 명시적인 담보책임, UCC §2-315³²⁾에 있어서는 특정목적의 적합성에 관하여 묵시적 담보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제 5 절 일 본

I. 개 요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은 제1장 총칙, 제2장 소비자계약, 제3장 금지 청구, 제4장 잡칙 및 제5장 별칙으로 구성되어 있다.³³⁾ 이 법에서는 크게 소비자계약에 관한 사항과 금지명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비자계약은 약관을 포함하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을 규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³⁴⁾ 먼저, 이 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31) § 2-314. Implied Warranty: Merchant ability; Usage of Trade.

(1) Unless excluded or modified (Section 2-316), a warranty that the goods shall be merchantable is implied in a contract for their sale if the seller is a merchant with respect to goods of that kind. Under this section the serving for value of food or drink to be consumed either on the premises or elsewhere is a sale.

(2) Goods to be merchantable must be at least such as

(a) pass without objection in the trade under the contract description; and

(b) in the case of fungible goods, are of fair average quality within the description; and

(c) are fit for the ordinary purposes for which such goods are used; and

(d) run, within the variations permitted by the agreement, of even kind, quality and quantity within each unit and among all units involved; and

(e) are adequately contained, packaged, and labeled as the agreement may require; and

(f) conform to the promise or affirmations of fact made on the container or label if any.

(3) Unless excluded or modified (Section 2-316) other implied warranties may arise from course of dealing or usage of trade.

32) § 2-315. Implied Warranty: Fitness for Particular Purpose.

Where the seller at the time of contracting has reason to know any particular purpose for which the goods are required and that the buyer is relying on the seller's skill or judgment to select or furnish suitable goods, there is unless excluded or modified under the next section an implied warranty that the goods shall be fit for such purpose.

33)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이 제정될 당시 법률상 문제점에 대하여는 內閣府國民生活局, 消費者契約法, 商事法務, 2007, 4~5면 참조.

34) 입법의 목적에 대하여는 消費者契約法研究會編, 消費者契約法, 日本流通産業新聞社,

정보의 질 및 양과 교섭력의 격차에 비추어 보아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그 밖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것을 규율하고 있다.³⁵⁾ 다음으로, 이 법에서는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소비자단체가 사업자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1조 참조).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비자계약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같은 법 제11조제1항).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비자계약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도 민법 및 상법 이외에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같은 법 제11조제2항). 이 법의 규정은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48조).

Ⅱ. 소비자계약법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주요 내용

1. 소비자계약의 개념과 취소 등

이 법에서 소비자란 사업으로 또는 사업을 위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자를 제외한 개인을 말하고, 사업자란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사업으로 또는 사업을 위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하며(같은 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법에서 사업자는 소비자

2001, 9~10면 참조.

35) 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사업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後勝卷則, 消費者契約の法理論, 홍문당, 평성 14년, 2~3면 참조.

계약의 조항을 정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소비자계약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있어 명확하고 평이한 것이 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는데 있어서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소비자계약의 내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1항). 소비자는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고, 소비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소비자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항).³⁶⁾

(1)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를 하는 경우 그 소비자에 대하여 ①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행위(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인) 또는 ② 물품, 권리, 용역, 그 밖에 해당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에 관하여 장래의 그 가액, 장래에 그 소비자가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 그 밖에 장래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그 제공된 단정적 판단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오인)를 함으로써 이를 오인하고, 그로 인해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제1항).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매개하는 것에 대한 위탁하고, 그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같은 제5조제1항).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하는 경우 그 소비자에 대하여 어떤 중요사항 또는 그 중요사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알리고, 그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36) 일본의 소비자보호법제와 관련하여 자세한 것은 성소미·신광식 편,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01., 337~378면 참조.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고지에 의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통상 생각하는 것에 한한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로 인해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제2항). 여기서 ‘중요사항’이란 소비자계약에 관한 ① 물품, 권리, 용역, 그 밖에 그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의 질, 용도, 그 밖의 내용 또는 ② 물품, 권리, 용역, 그 밖에 그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의 대가, 그 밖의 거래조건으로서 소비자가 그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통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같은 법 제4조제4항).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하는 경우 그 소비자에 대하여 ① 그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주거 또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② 그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소비자가 퇴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소비자를 퇴거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를 함으로 인해 난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같은 법 제4조제3항). 다만, 이들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같은 법 제4조제4항).

(2) 해석규정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는 하자있는 민법의 의사표시 취소에 관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조 참조).

(3) 취소권의 행사기간 등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관한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효로써 소멸하고, 해당 소비자계약의 체결 시부터 5년이 경과한 때에도 같다(같은 법 제7조제1항). 다만, 회사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 또는 기금의 출연이 소비자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기금의 출연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이를 취소할 수 없다(같은 법 제7조제2항).

2. 소비자계약의 무효

(1)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무효

소비자계약에서 ①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 ②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는 조항, ③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채무이행으로 이루어진 해당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 규정에 따른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 ④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채무이행으로 이루어진 해당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 규정에 따른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는 조항, ⑤ 소비자계약이 유상계약인 경우 그 소비자계약의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때에 그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사업자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8조제1항).

(2) 소비자가 지불하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 등의 무효

소비자계약 조항 중에서 ① 소비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약으로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조항에서 설정된 해제의 사유, 시기 등의 구분에 따라 그 소비자계약과 같은 종류의 소비자계약의 해제에 따라 그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평균적인 손해액을 초과하는 부분(초과하는 부분)과 ② 소비자계약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지불기일까지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으로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지불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지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일수에 따라서 그 지불기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그 지불기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중 이미 지불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연 14.6%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9조).

(3)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조항의 무효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의 공공질서에 관계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으로서, 신의성실의 기본원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0조).

Ⅲ. 소비자계약법의 금지명령에 관한 주요 내용

1. 적격소비자단체

이 법에서 적격소비자단체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적격성을 가진 법인인 소비자단체로서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4항).

(1) 적격소비자단체의 인정 등

금지청구관계업무(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정보수집과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결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3조제1항). 여기서 내각총리대신은 인정 신청을 한 자가 ① 특정 비영리활동 촉진법에서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일반사단, 또는 일반재단법인일 것, ②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활동, 그 밖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그 활동을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③ 금지청구관계업무의 실시에 관한 조직, 금지청구관계업무의 실시방법,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정보의 관리 및 비밀의 유지방법, 그 밖에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 및 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등의 요건 모두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인정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3조제3항). 이 경우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인정일 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하고(같은 법 제17조제1항),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고자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17조제2항).

(2) 금지청구관계업무등

적격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은 관계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적격소비자단체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금지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한다(같은 제23조제1항).

둘째, 적격소비자단체는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정보를 그 상대방, 그 밖에 제3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같은 법 제24조).

셋째, 적격소비자단체의 임원, 직원, 전문위원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5조).

넷째,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의 명칭, 자기의 성명 및 적격소비자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지위 등의 사항을 그 상대방에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6조).

다섯째, 적격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 대하여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및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또는 재판외의 화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7조).

여섯째, 적격소비자단체는 ①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 또는 민사소송법의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환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②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에 따라 명해진 금전의 지불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③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환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④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된 위약금의 지불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 그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기부금, 찬조금,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마찬가지로 적격소비자단체의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은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에 관련된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기부금, 찬조금,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28조제2항).

(3) 감 독

적격소비자단체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부담한다.

첫째,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업무 및 회계처리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0조).

둘째, 적격소비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적격소비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그 금지청구관계업무, 그 밖의 업무가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상황의 조사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가 하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같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2항). 적격소비자단체의 사무소에는 정관, 업무규정, 임직원등명부 등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1조제3항).

셋째,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처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적격소비자단체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32조제1항).

넷째, 내각총리대신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인정 요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이러한 요건들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33조제2항).

2. 금지청구

(1) 금지청구권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자, 수탁자등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등의 대리인이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를 하는 때에 불특

정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자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예방 또는 그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제1항 전단). 또한 적격소비자단체는 수탁자등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등의 대리인이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소비자계약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정지시 또는 교사의 정지,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제2항).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을 포함하는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예방 또는 그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제3항).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을 포함하는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대리인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대리인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에 대한 시정지시 또는 교사의 정지,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제4항).

(2) 금지청구의 제한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또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지청구는 원칙적으로 ① 해당 적격소비자단체 또는 제3자의 부

정한 이익을 위해 또는 그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② 다른 적격소비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 등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 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청구의 내용 및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같은 법 제12조의2).

3. 소송절차등의 특례

적격소비자단체는 금지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의 피고가 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의 요지 및 분쟁의 요점 등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금지청구를 하고, 서면이 도달한 때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그 소를 제기할 수 없다(같은 법 제41조제1항 전단). 금지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목적의 가액산정에 대해서는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한 소로 간주한다(같은 법 제42조).

제 6 절 시사점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은 약관을 넘어서 소비자계약 차원의 불공정 계약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으며, 이에 독일은 (구)약관규제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약관에 관한 실체법을 민법에 편입하고 절차조항을 부작위소송법으로 이원화하여 규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독일의 경우는 약관을 민법에 편입하여 일반적인 민사거래로 취급하고 있다. 미국은 약관에 관하여 실체법적인 내용을 통일상법전과 계약에 관한 제2 리스테인터먼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모두 약관을 넘어서 계약일반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다루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약관을 소비자계약에 포섭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불공정한 계약을 규율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위에서 살펴본 외국의 입법례 등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경우만이 유일하게 약관규제법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 소비자법의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일부 조항(예컨대, 소비자와 고객의 개념 정의, 약관 개념의 정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그 적용상 한계가 나타나고 있고 정부의 역할도 과도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전면 개정, 소비자계약법으로의 전환, 또는 민법예로의 편입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³⁷⁾

37) 유럽연합과 독일의 입법례를 통한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민법예로의 편입에 대한 시사점에 관하여는 이준형, 약관규제법·소비자법의 민법예로의 통합문제에 대한 관건, 재산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9, 338~341면 참조.

제 3 장 약관규제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제 1 절 개 관

우리나라에서 약관규제에 관하여는 약관규제법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고 그 밖에 각종 법령에서 약관의 도입과 사용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약관(또는 표준약관)의 도입이나 그 사용을 권장 또는 강제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권장 또는 강제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분야별로 차이가 발견된다.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되었으며,³⁸⁾ 1986년 제정 이후에 여러 차례 개정이 있었지만 그 주요골자는 변화가 없었다. 다만,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독일의 (구)약관규제법이나 민법의 약관 조항과 달리 정부의 역할과 표준약관 등이 두드러져 입법화되어 있는 점에서 차이가 발견된다.

제 2 절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개선

I. 약관규제법의 연혁과 시사점

1.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주요 연혁

(1) 1986년의 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이 법은 1986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는데, 그 제정이유로 “약관에 의한 거래는 현대의 대량생산·대량소비사회에서 등장하게 된 새로운 현상으로서 여러 가지 유용한 기능을 해 온 것이 사실이므로 이에 약

38) 1986년 제정된 약관규제법은 1976년 독일의 약관규제법을 모델로 하여 제정된 것으로 이 법의 시행으로 소비자보호라는 목적을 비교적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는 견해도 있다(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3., 314면).

관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들을 무효화하고, 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이 법에 위반되는 조항을 적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경제기획원장관으로 하여금 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권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약자가 명실상부한 계약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① 약관에 의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에게 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부과, ② 약관해석의 일반원칙으로서 객관적 해석의 원칙 및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을 채택, ③ 약관조항의 무효의 일반원칙을 규정, ④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을 부당하게 회피하는 조항을 금지, ⑤ 부당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을 금지, ⑥ 고객의 계약의 해제·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 ⑦ 사업자에게 급부의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부당한 이행의 중지 또는 대행을 할 수 있게 하는 조항을 금지, ⑧ 고객의 법률상의 권익을 부당하게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을 금지, ⑨ 부당한 의사표시의 의제조항을 금지, ⑩ 고객에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재판관할의 합의조항등을 금지, ⑪ 불공정한 약관의 시정을 위한 제도를 마련, ⑫ 약관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약관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2) 1992년의 일부 개정 및 주요 내용

1992년 12월 8일의 일부개정에서는 그 이유로 “약관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대한 시정명령제도를 도입하고, 약관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약관심사위원회의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흡수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을 위반한 불공정한 약관조항에 의하여 거래를 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응한 자에 대하여는 벌칙을 과하도록 규정하고, 둘째,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정한 표준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하는지의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약관에 대한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이었다.

(3) 2001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01년 3월 28일의 일부개정에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는 약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약관 조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법적 강제력이 있는 시정명령을 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4) 2004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04년 1월 20일의 일부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로 “불공정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와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의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표준약관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비자단체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 제19조의2제2항). 둘째, 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한 약관조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약관의 제정을 권고하고, 당해 사업자 등이 권고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

관을 마련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 제19조의 2제3항 내지 제5항). 셋째,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거나 마련한 약관을 표준약관으로 하고,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사업자 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표지(標準約款標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법 제19조의2제5항 및 제7항).

(5) 2005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05년 3월 31일의 일부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등 시정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및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경우 조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제시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6) 2007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07년 8월 3일, 일부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대부분 약관이 한자 및 전문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로 하여금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 및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고, 약관의 내용 중 중요한 내용을 부호·문자·색채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약관을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7) 2010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10년 3월 22일의 일부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양벌(兩罰) 규정에서 법인 또는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을 명확하게 함으로

써 양벌 규정에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8) 2011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11년 3월 29일의 일부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약관의 중요 내용을 굵고 큰 문자로 표시하도록 하고, 약관 명시·교부의무 면제 대상에서 우편업 및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 외의 통신업을 제외하며,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9) 2012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12년 2월 17일의 일부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로 “약관 심사 과정에서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되는 경우 심사청구를 반려하고 새로운 약관 조항에 대하여 다시 심사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개별 사업자의 피해구제는 약관 조항의 시정 이후 소송 등 실질적인 피해구제절차를 거쳐야만 가능한 문제점이 있는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둬으로써 이를 통해 분쟁당사자 간의 분쟁을 해결하고,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여 불공정 약관의 다수 계약자에 대한 추가적 피해 발생을 예방하는 등 약관 관련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 대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19조의2 신설). 둘째, 불공정 약관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었다(안 제24조 신설). 셋째,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와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회의로 구분하였다(안 제25조 신설). 넷째, 불공정약관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객은 분쟁조정 신청서를 협의회에 제출함으로써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7조 신설). 다섯째,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제시할 수 있으며,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를 하거나 분쟁당사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7조의2 신설). 여섯째,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하며, 분쟁당사자 간에 해당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았다(안 제28조 신설). 일곱째, 협의회는 조정이 성립된 사안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사업자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효과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안 제28조의2 신설). 여덟째, 협의회의 운영·업무 및 관련 연구에 필요한 재원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안 제29조의2 신설).

(10) 2013년의 일부개정 및 주요 내용

2013년 5월 28일의 일부개정에서는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약관조항 사용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불공정약관조항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공정약관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효과를 증진하

려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³⁹⁾

2. 시사점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약관규제법은 제정 당시 상당히 진보적인 형태의 입법으로 사업자와 소비자(사업자와 고객)사이의 약관을 이용하여 체결된 계약의 효력을 규율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최근까지 약관규제법의 개정은 소폭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약관규제법은 제정 이후 실제적 내용보다는 주로 정부의 약관규제의 실효성 내지는 약관의 공평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행정적 규제를 통한 입법개선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최근 약관규제법은 법체계상의 문제점과 규율내용의 실효성 등의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약관규제법의 시장 중심적 또는 시장친화적 방향으로 개편(민법예로의 편입 또는 (가칭)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등)을 하거나 그 자체의 개선을 통하여 행정규제를 보완하는 시장자율에 기초한 민사법의 원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

II.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

1. 개 요

(1) 약관의 개념 및 적용

약관규제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통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에서 약관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비자의 불균형한

39) 약관규제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내용은 장경환,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경희대학교, 2006, 242~247면 참조.

거래상 지위를 보완하고 거래환경의 복잡화와 다양화에 따라 거래관계를 단순화하여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래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⁰⁾

한편,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사용하는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대하여 적용되고 그 규율하는 내용을 일반적 민사거래를 규율하는 방식으로 입법화되어 있으며, 이 법의 성격은 민사실체적 사항을 강행법규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관청에 의한 시정명령(권고) 및 과태료를 부과되는 행정법적인 성격도 포함하고 있다.⁴¹⁾

(가) 약관 및 사업자 등의 개념

약관거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약관을 이용하여 상품 등을 거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하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전자약관을 포함한다. 그러나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교섭이 이루어진 약관 조항은 약관 작성상의 일방성이 없으므로 약관규제법 소정의 약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원칙적으로 개개의 조항별로 교섭의 존재 여부를 살펴야 하며, 약관 조항 중 일부의 조항이 교섭되었음을 이유로 그 조항에 대하여는 약관규제법의 적용이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아니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하여는 여전히 같은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⁴²⁾ 약관이 계약당사자 사이에 구속력을 갖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또는 법규범적

40) 유사한 견해로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48면 참조.

41)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와 법원 약관심사 사이의 차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는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하지 않고, 약관조항 자체의 불공정성을 심사하여 그 효력 유무를 결정한 후 특정 약관조항의 삭제 및 수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이와 달리 법원은 구체적인 계약관계에 있어서 당사자의 권리·의무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선결문제로 약관조항의 효력 유무를 심사하고, 그 효과도 개별 사건에 한정된다.

42) 대판 2000.12.22. [99다4634]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므로 계약당사자가 명시적으로 약관의 규정과 다른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면, 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그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⁴³⁾

한편, 이 법은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작성하여 거래에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생활을 균형 있게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같은 법 제1조). 이 법에서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하며,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2항 및 제3항). 이와 같이 약관규제법은 약관이라는 형식을 고집하고 있고, 사업자와 고객이라는 당사자를 특정하고 있어서 이를 벗어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로 말미암아 소비자의 보호가 축소되고 세계적인 소비자보호의 추세에도 역행하는 문제가 있다.⁴⁴⁾

(나) 적용범위

이 법은 약관이 상법 제3편과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30조제1항). 또한

43) 신용보증계약의 내용이 된 신용보증약관에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은행인 채권자가 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일부 채권에 대한 대위변제를 받고 그 채권과 함께 이를 담보하는 근저당권의 일부를 신용보증기금에게 양도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사이에 명시적으로, 위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자의 잔존채권이 있으면 양도한 근저당권에서 채권자가 우선하여 그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다면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한 신용보증약관의 규정을 이유로 채권자와 신용보증기금 사이의 위와 같은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다(대판 1998.9.8. [97다53663]).

44) 유사한 견해로 김대규,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 연구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253~256면 참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으로서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③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 경우에는 이들 불공정조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같은 법 제15조).

(2) 약관의 작성 및 설명

(가) 약관의 작성 및 제공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1항).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3조제2항). 다만,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그리고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 통신업은 예외로 하되, 이들 업종의 약관인 경우에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해당 약관을 비치하여 고객이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2항).

(나) 설명의무

또한 사업자는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조 같은 법 제3조제3항).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하고, 약관조항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⁴⁵⁾ 예컨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⁴⁶⁾, 은행거래약관에 예금채권의 양도금지 특약⁴⁷⁾,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중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한 조항⁴⁸⁾,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⁴⁹⁾ 등이 중요한 내용에 해당된다.⁵⁰⁾

판례는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보았고,⁵¹⁾ 통신

45) 대판 2008.12.16. [2007마1328]

46)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다(대판 2003.8.22. [2003다27054]).

47) 예금채권은 금전채권의 일종으로서 일반거래상 자유롭게 양도될 필요성이 큰 재산이므로, 은행거래약관에서 예금채권에 관한 양도금지의 특약을 정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특약은 예금주의 이해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므로, 은행으로서 고객과 예금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러한 약관의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은행이 그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예금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은행거래약관에 포함된 양도금지의 특약을 예금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8.11.10. [98다20059]).

48) 보험계약의 승계절차에 관하여 보험회사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가 서면에 의하여 양도통지를 하고 이에 대하여 보험회사가 보험증권에 승인의 배서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가 그와 같은 약관내용을 보험계약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에게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대판 1994.10.14. [94다17970]).

49) 귀금속 가게에 대한 기계경비계약에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한 면책약관은 계약의 체결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사업자의 설명 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고, 귀금속 소매업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라거나 이미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대판 2010.7.15. [2010다19990]).

50) 보다 자세한 사례는 장경환, 약관규제법의 개정론적 고찰 - 설명의무, 일반원칙, 의외성의 원칙 및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 경제법연구 제4권 제1호, 경제법연구회, 2005, 85-91면.

5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고객에게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사항 중 고객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지고 있어서, 만일 사업자

판매 방식으로 체결된 상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약관내용의 개요를 소개한 것이라는 내용과 면책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확인하라는 내용이 기재된 안내문과 청약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우송한 것만으로는 보험자의 면책약관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⁵²⁾ 여기서 설명의무의 대상은 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고 고객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대리인에게 약관을 설명하여도 된다.⁵³⁾ 약관에 대하여 명시·설명 의무를 하였다는 것 또는 그 대

가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나, 사업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상대방인 고객이 알 수 없는 가운데 약관에 정하여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로 되어 고객이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해 거래계약에 당연히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것이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이를 따로 명시·설명할 의무는 없다. 수출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화물의 대금 회수를 위하여 발행된 화환어음에 대하여 수출어음보험관계 및 수출신용보증관계가 성립하도록 되어 있는 구 수출어음보험약관(1994.8.3. 수출보험법의 개정에 따라 1994.11.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수출신용보증약관(1994.5.31. 개정 전의 것)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나,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외국환은행만을 고객으로 하여 비영리적으로 운영하는 수출어음보험은 수출보험법에 근거한 것이므로 그 수출어음보험계약에는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수출보험법의 관련 규정이 당연히 적용되고, 그 각 약관에는 수출보험법의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기까지 하였으므로, 그 각 약관에 규정된 수출계약의 의미는 구 수출보험법(1994.8.3. 법률 제47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규정된 것으로서 한국수출보험공사로서는 그 수출계약의 의미를 특별히 설명할 의무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99.9.7. [98다19240])

52) 보험계약의 청약에 유인하는 안내문에 보험약관의 내용이 추상적·개괄적으로 소개되어 있을 뿐 그 약관 내용이 당해 보험계약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부연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닌 이상, 그러한 안내문의 송부만으로 그 약관에 대한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거나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알게 되어 굳이 설명의무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관한 법리는 보험료율이 낮다거나 보험계약의 체결 방식이 통상의 경우와 다르다고 하여 달라지지 아니한다(대판 1999.3.9. [98다43342·43359]).

53) 상법 제638조의3 제1항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 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고

상이 아니라는 것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진다.⁵⁴⁾

(다) 위반의 효과

이와 같은 약관의 작성·설명의무에 위반하여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같은 조 제4항). 따라서 사업자는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⁵⁵⁾

(3)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은 약관에 우선한다(같은 법 제4조). 따라서 판례는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

할 것임은 물론이라 할 것이나, 그 설명의무의 상대방은 반드시 보험계약자 본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대리인과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대리인에게 보험약관을 설명함으로써 족하다(대판 2001.7.27. [2001다23973]).

5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 및 보험자의 면책사유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만일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지만, 보험약관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므로 보험자로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약관의 내용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볼 것인바, 이 경우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의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보험자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2001.7.27. [99다55533]).

55)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 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고,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대판 1996.4.12. [96다4893]).

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되지만,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았다.⁵⁶⁾

(4) 약관의 해석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같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 따라서 약관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확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⁵⁷⁾

이와 같은 약관해석의 원칙에 대하여 판례는 조항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56) 금융기관의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금융사정의 변화 등을 이유로 사업자에게 일방적 이율 변경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개별약정서에서는 약정 당시 정해진 이율은 당해 거래기간 동안 일방 당사자가 임의로 변경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경우, 위 약관조항과 약정서의 내용은 서로 상충된다 할 것이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의 개별약정우선의 원칙 및 위 약정서에서 정한 개별약정 우선적용 조항에 따라 개별약정은 약관조항에 우선하므로 대출 이후 당해 거래기간이 지나기 전에 금융기관이 한 일방적 이율 인상은 그 효력이 없다(대판 2001.3.9. [2000다67235]).

57) 대판 2011.09.08. [2009다73295]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⁵⁸⁾

2. 불공정약관조항

약관규제법은 개별약관의 불공정조항을 가려내기 위해 크게 2가지의 판정기준(일반조항과 개별금지조항)을 두고 있다. 일반조항으로는 신의성실원칙이 있으며, 개별금지조항으로는 ① 사업자 면책조항의 금지, ② 손해배상액의 예정, ③ 사업자의 부당한 계약 해제·해지권 제한, ④ 채무의 이행, ⑤ 고객의 권익보호, ⑥ 의사표시의 의제, ⑦ 대리인의 책임가중, ⑧ 소송상권리의 제한 등 8개 유형으로 구분된다.⁵⁹⁾

(1) 불공정한 약관

(가) 일반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공정을 잃은 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6조제1항). 이와 같이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

58)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작성자는 계약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대판(전합) 1991.12.24. [90다카23899]).

59) 불공정약관 심결례 분석에 관해서는 이의선·문정숙,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8, 96~102면 참조.

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 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⁶⁰⁾⁶¹⁾

약관의 내용 중에 ①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예컨대, 고객에게 귀속할 물건을 사업자의 소유로 정하는 조항), ② 고객이 계약의 거래행태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예컨대, 쌍방간의 계약에서 사업자의 의무를 배제하는 조항),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예컨대, 생명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보험금 청구요건을 갖추기 어려운 조항)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같은 조 제2항).

60)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2, 3호가 규정하는 바와 같은 약관의 내용통제원리로 작용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보험약관이 보험사업자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작성되고 보험계약자로서는 그 구체적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가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계약 성립의 과정에 비추어, 약관 작성자는 계약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 즉 보험의 손해전보에 대한 합리적인 신뢰에 반하지 않고 형평에 맞게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행위원칙을 가리키는 것이며, 보통거래약관의 작성성이 아무리 사적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위와 같은 행위원칙에 반하는 약관조항은 사적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법원에 의한 내용통제 즉 수정해석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며, 이러한 수정해석은 조항 전체가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조항 일부가 무효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효부분을 추출 배제하여 잔존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시킬 수 있는 경우에도 가능하다(대판(전합) 1991.12.24. [90다카23899]).

61) 유사한 견해로 장경환, 앞의 논문, 91~96 참조.

(나) 특별규정

(a) 채무의 이행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상당한 이유 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예컨대,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은 불인정하고 임대인만 차임을 인상할 수 있다는 조항, 수강자가 교습 중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교습을 종료할 수 있다는 조항 등),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0조).

(b) 면책조항의 금지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사업자, 이행보조자 또는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의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예컨대, 주차장내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주차장 이용약관 등 조항), ②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조항(예컨대,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매매약관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담보책임을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견본 등 표시와 다른 물건에 대한 책임감면 조항), ③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담보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책임을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예컨대,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시에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정한 조항 등)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7조).⁶²⁾ 판례도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에

62) 표준약관의 면책약관에 대한 규제여부는 최홍섭·박영준, 약관규제법에 의한 면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수용가가 받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로 보았다.⁶³⁾

(c) 손해배상액의 예정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8조). 예컨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가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⁶⁴⁾

책약관의 규제 -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경영법률학회 제15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510~516면 참조.

63)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 제51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설비에 고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한국전력공사는 수용가가 받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면책약관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에는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7조제1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나, 그 외의 경우에 한하여 한국전력공사의 면책을 정한 규정이라고 해석하는 한도에서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02.4.12. [98다57099]).

64) 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2001.10.31. 산업자원부령 제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7] 제2호 (바)목 (3)이 ‘가스사용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비를 부담한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가스공급을 중단하거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었던 점(그 후 2002.12.30. 위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공급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을 보상하여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가스공급자로서는 당해 가스사용시설을 철거하여 재활용하거나 또는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새로운 가스공급자에게 시설을 양도함으로써 시설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따라서 약관조항이 무효인 이상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민법 제 398조제2항을 적용하여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⁶⁵⁾

(d) 고객의 권익보호

고객의 권익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법률규정에 의한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박탈하는 조항, ③ 고객이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④ 사업자가 사업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상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11조).

(e) 대리인의 책임가중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13조).

종합해 보면,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자가 가스공급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 가스공급자가 부담한 시설비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스공급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한 LPG 공급 및 사용계약서의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판 2006.11.9. [2006다27000]).

65)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은 제6조제1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약관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들고 있으며, 제8조에서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 1996.09.10. [96다19758]).

(f) 소제기의 금지 등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14조). 예컨대,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이다.⁶⁶⁾

(2) 계약의 해제 및 해지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예컨대,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시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조항 또는 1회라도 대금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 계약을 자동으로 해제한다는 조항, 회원 가입시 납입한 입회비는 사유를 불문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조항 등), ②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부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③ 법률에 따른 사업자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행사 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④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66) 대전에 주소를 둔 계약자와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건설회사 사이에 체결된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라는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1998.6.29. [98마863]).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⑤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의무나 손해배상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⑥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적인 기간의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9조). 예컨대,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⁶⁷⁾

(3) 의사표시의 의제

의사표시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약관의 내용 중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하는 조항(다만, 이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된다),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67)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 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규제법 제9조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판 1998.1.23 [96다19413]).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은 무효이다(같은 법 제12조).

(4) 일부 무효의 특칙

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조항이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계약의 내용이 되지 못하는 경우나 불공정약관조항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으로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당사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때에는 당해 계약을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6조). 즉 불공정한 약관은 당연 무효이고, 약관의 일부조항이 무효인 경우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존속한다. 다만, 유효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계약전체를 무효로 한다.

3. 약관의 규제

(1)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

사업자는 불공정약관조항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7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7조의2 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사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시장지배적사업자인 경우, ②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일반 공중에게 물품·용역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계약 체결의 긴급성·신속성으로 인하여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약관 조항의 내용을 변경하기 곤란한 경우, ④ 사업자의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가 현저하게 우월하거나 고객이 다른 사업자를 선택할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것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 ⑤ 계약의 성질상 또는 목적상 계약의 취소·해제 또는 해지가 불가능하거나 계약을 취소·해제 또는 해지하면 고객에게 현저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⑥ 시장지배적사업자가 위의 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여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약관조항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2항).

이들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때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같은 내용의 불공정약관조항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의2 제3항).

(2) 관청 인가 약관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관청이 작성한 약관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은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행정관청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제1항).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약관이 불공정약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제2항). 즉 법 위반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3) 약관의 심사청구 등

① 약관의 조항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 ②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 ③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

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④ 사업자단체는 약관 조항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대상인 약관 조항이 변경된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심사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심사대상을 변경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의2).

(4) 표준약관

(가) 표준약관이란

표준약관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고객의 입장을 반영하여 당사자의 권리의무의 내용을 공정하게 정하여 놓은 일정한 거래 분야의 표준이 되는 약관을 말한다. 이와 같이 표준약관은 불공정약관에 대한 개별적 규제에 한계가 있어 동일내용의 소비자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분쟁과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거래분야에 표준이 되는 약관을 도입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에 해당된다.⁶⁸⁾

따라서 약관규제법에 따르면,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의3 제1항), 소비자단체 등은 소비자 피해가 자주 일어나는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2항).

68) 금융기관의 표준약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최금숙, 약관규제법하에서의 금융기관 표준약관의 기한이익상실조항, 법학논집 제8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19~32면 참조.

(나) 표준약관 심사청구 마련 요청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비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준약관의 제정을 요청할 수 있다(약관규제법 19조의2 제2항).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소비자단체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②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피해 발생 상황을 조사하여 약관이 없거나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 경우에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하여 심사청구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3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이 권고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면 관련 분야의 거래 당사자 및 소비자단체등의 의견을 듣고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표준이 될 약관을 마련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4항).

(다) 표준약관 사용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을 심사하거나 마련한 표준약관을 공시(公示)하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권장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19조의3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 받은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6항).

2012년 12월 31일까지 32개 분야 총 69개 표준약관(표준약관 참조)이 마련되어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거래분야에 따라서는 그 활용도에 차이가 있어서 표준약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⁶⁹⁾

69) 표준약관에 관련한 약관규제법의 개정 방안은 황진자, 약관규제법 정비방안 연구(정책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09.12., 75면 참조.

[표준약관 제·개정 현황(공정거래위원회 제출 자료)]

2012.12.31.

거래분야	표준약관명
1. 아파트분양 및 주택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 표준공급계약서 ○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2. 병원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술(검사·마취동의서) ○입원약정서
3. 은행여신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여신거래약정서 I (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 I (가계용) ○추가약정서(한도증액용) ○여신거래약정서 II(기업용) ○대출거래약정서 II(가계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기업용) ○지급보증거래약정서(가계용) ○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보증서 ○근보증서
4. 상가분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가분양계약서
5. 백화점임대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백화점 임대차계약서
6. 은행예금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금거래기본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 ○적립식 예금약관 ○거치식 예금약관
7. 주차장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차장 관리규정
8. 휴양콘도미니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휴양콘도미니엄 분양계약서

거래분야	표준약관명
	○휴양콘도미니엄 입회계약서 ○휴양콘도미니엄 시설이용약관
9. 여행업	○국내여행 표준약관 ○국외여행 표준약관
10. 상품권이용	○상품권 표준약관
11. 전자거래	○인터넷사이버몰이용 표준약관 ○전자금융거래 표준약관 ○전자보험거래 표준약관
12. 공연업	○영화관람 표준약관
13.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
14. 운수업	○택배 표준약관 ○퀵서비스이용 표준약관
15. 관혼상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장례식장 표준약관 ○예식장 표준약관 ○상조서비스 표준약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
16. 교육서비스	○자동차운전학원 표준약관 ○학원 표준약관 ○유학수속대행 표준약관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 ○학습지 표준약관
17. 체육, 레저	○골프장이용 표준약관 ○체력단련장 표준약관
18. 방송, 통신	○종합유선방송 표준약관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19. 이사서비스	○이사화물 표준약관

제 3 장 약관규제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거래분야	표준약관명
20. 대부거래	○대부(사채)거래 표준약관 ○대부보증 표준약관
21. 가전제품 및 영업용제품 거래	○자동판매기매매 표준약관 ○정수기임대차(렌탈) 표준약관 ○무인경비 표준약관
22. 세탁서비스	○세탁서비스 표준약관
23. 자동차	○자동차(신차)매매 표준약관
24. 신용카드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5. 건설기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26. 발코니창호	○발코니창호공사 표준계약서
27. 대중문화예술	○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
28. 자동차대여	○자동차대여표준약관
29. 이민대행	○이민대행표준약관
30. 양 계	○답계육 표준약관
31. 요양급여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32. 오락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32개 분야	69개 표준약관

(5) 표준약관 표지(마크)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0년 2월부터 “표준약관 표지(마크)제”를 시행하여 사업자의 표준약관 사용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선택에 기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표지(標識)를 정할 수 있고,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7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는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8항).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이를 위반하여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표준약관의 내용보다 고객에게 더 불리한 약관의 내용은 무효로 한다(같은 법 제19조의3 제9항).

(6) 조사 등

공정거래위원회는 ①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경우 약관이 이 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같은 법 제20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의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의하기 전에 그 약관에 따라 거래를 한 사업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그 약관이 심사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22조제1항). 이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사 대상이 된 약관이 다른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를 받았거나 받아야 할 경우에는 심의에 앞서 그 행정관청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같은 법 제22조제3항).

(7) 불공정약관조항의 공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에 위반된다고 심의·의결한 약관 조항의 목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3조).

4. 분쟁의 조정 등

(1) 약관 분쟁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불공정한 약관, 또는 ②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과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에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약관 분쟁조정협의회를 두고 있다(같은 법 제24조제1항).

(2) 조정 및 그 효력

협의회는 분쟁당사자에게 분쟁조정사항을 스스로 조정하도록 권고하거나 조정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의2 제1항). 협의회는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분쟁당사자가 기명날인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공정거래위원회, 고객 또는 사업자는 조정이 성립된 사항과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다수 고객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경우로서 ① 불공정약관 또는 약관의 작성 주체나 약관의 명칭 또는 문구에 상관없이 해당 약관 조항의 내용이 불공정한 약관과 비슷한 유형의 약관으로서 법률상 쟁점이 공통되는 약관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과 ② 피해가 발생한 고객 중 (i)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사업자와 합의한 고객 (ii)중재법에 따라 중재가 진행 중이거나 중재를 신청한 고객 (iii)법원에 소를 제기한 고객을 제외한 고객의 수가 20명 이상일 것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협의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집단분쟁조정)을 의뢰하거나 신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1항). 집단분쟁조정을 의뢰받거나 신청 받은 협의회는 협

의회의 의결로서 집단분쟁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같은 법 제 28조의2 제2항).

협의회는 사업자가 협의회의 집단분쟁조정절차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자로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한 보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의2 제5항).

5. 행정벌 등

①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하면서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자, ②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34조제1항). 또한 ①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그 약관의 사본을 내주지 아니한 자, ② 고객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자, ③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 내용을 고객이 알기 쉽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34조제2항).

다시 말해서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유형에 따라 최대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있고, 표준약관표지 부정사용자, 공정위 조사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약관의 명시, 설명의무 위반자, 표준약관과 다르게 정한 주요내용 표시의무 위반자는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Ⅲ. 약관규제법의 개선방안

1. 약관규제법 체계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약관규제법의 주요 내용과 판례의 해석 및 적용사례를 살펴 보았다. 현행 약관규제법은 최초 제정 당시 독일의 (구)약관규제법

을 모델로 하여 비교적 잘 만든 입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 약관규제법은 다른 법률과 충돌하거나 관련 판례의 분석 결과 커다란 흠결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현행 약관규제법의 체계가 낙후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며 일부 조항의 내용이 모호하여 그 개선이 문제된다.

(1) 약관규제법의 개선 필요성과 그 방안

독일의 약관규제법이 폐지되어 민법에 편입되었고 미국, 일본에서 약관에 관하여 민사 일반법규의 형태로 규율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처럼 독자적인 입법사례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또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미국이나 일본의 법제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약관에 관한 독립 입법은 최근 세계적인 동향에서 벗어난다. 즉 각국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소비자계약이라는 형태로 약관을 효력을 다루고 있으며 약관이라는 형식을 고집하지 않고 있다.⁷⁰⁾

이와 같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약관규제법 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고려하면, 여러 가지의 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⁷¹⁾ 특히, 약관과 관련된 행정규제를 보충하거나 또는 이를 대신하는 사법규제 내지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본다면, 보다 많은 법체계 개선방안이 가능할 수 있다.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을 그대로 두고서 관련 입법사항을 개선하는 방안⁷²⁾, 약관규제법을 폐지하고 (가칭)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방안⁷³⁾ 및 약관규제법을 폐지하고 대신에 민법에 편입하는 방

70) ‘약관’이라는 형식성에 관한 자세한 사례는 김동훈, 약관규제에 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법학논총 제18집, 국민대학교, 2006, 114~116면 참조.

71) 독일의 경우 소비자법(약관규제법, 방문판매법, 통신판매법, 임시주거법, 소비자선용법 등)이 민법에 편입되었고, 그 편입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것은 이병준,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118~141면 참조.

72) 이 개선방안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윤방현, 약관의 규제 및 개선방안,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한양대학교, 2009, 309~321면 참조.

73) 민법전 편입 반대론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김대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민법전 편입 및 개성 - 법정정책적 논의와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8권, 법문사,

안만을 고려하여 주요 입법사항을 살펴보고자 한다.⁷⁴⁾

(2) 약관규제법의 폐지와 (가칭)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방안

(가칭)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방안은 일본의 소비자계약법처럼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을 폐지하고 약관에 관한 실체법적인 조항을 소비자계약의 형태로 반영할 수 있다.⁷⁵⁾ 이 제정방안에서는 약관을 포함하는 소비자계약의 무효 조항과 소비자계약의 취소권을 새롭게 추가하는 조항 및 금지청구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칭)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목적에서는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차이 및 교섭력의 불공평성으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로 인하여 오인 또는 곤혹하였던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불공정한 내용의 소비자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화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가칭)소비자계약법에서는 약관, 사업자 및 고객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에 소비자와 사업자 및 소비자계약을 새롭게 개념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는 자신을 위한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을 의미하고, 사

2002, 600~604면 참조.

74) 소비자계약법제에 관한 장기적 개선방안으로 소비자계약법제의 통합모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입법대안으로 소비자기본법의 보완방안, 소비자계약법의 제정방안 및 민법예로의 편입방안을 제시하는 견해도 있다(자세한 것은 김성천·송민수, 소비자계약법 제정방안 연구(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1, 159면~161면 참조).

75) 소비자계약 규제의 목적은 소비자권리의 실현과 소비자의 책무 이행을 법제도적 기반구축에 있다는 점에서 민사규제의 개선도 소비자를 위한 실체법적 규제와 절차법적 규제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김성천·송민수, 위의 보고서, 53면). 이 견해에 따르면, 소비자계약 규제를 공적 규제, 민사규제, 자율규제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 규제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김성천·송민수, 위의 보고서, 54-58면 참조.

업자는 자신의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고 정의할 수 있다.⁷⁶⁾ 이 경우 소비자계약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약관규제법은 제3조에서 약관의 작성의무와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즉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고, 표준화·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하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부호, 색채, 굵고 큰 문자 등으로 명확하게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고객이 요구할 경우 그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내주어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약관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가칭)소비자계약법에서는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화할 수 있다. 즉 사업자는

76) 소비자기본법은 제2조제1호에서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의 소비자 중 물품 또는 용역을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의 범위는 ①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다만, 제공된 물품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② 제공된 물품등을 농업(축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어업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는 “사업자라 함은 물품을 제조·수입·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와 사업자의 개념정의를 민법에서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오히려 일본의 소비자계약법 또는 독일민법 제13조(“소비자라 함은 자신의 영업활동이나 독립적 직업활동에 속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의 소비자 개념과 제14조제1항(“사업자라 함은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자신의 영업활동 또는 독립적 직업활동의 일환으로 행위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이나 권리능력 있는 인적 회사를 말한다.”)의 사업자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최근 각국의 입법 추세에 부합한다.

소비자계약의 조항을 정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소비자계약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쉽고 명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하며, 소비자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소비자의 권리의무와 그 밖의 소비자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경우 소비자에게 소비자계약의 내용을 소비자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분명하게 밝히고, 소비자가 요구할 경우 그 소비자계약서의 사본을 소비자에게 내주어 소비자가 계약의 내용을 알 수 있게 하여야 하며, 소비자계약에 정하여져 있는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단,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를 사업자가 위반하여 소비자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비자는 해당 소비자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넷째, (가칭)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을 편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입법화할 수 있다. 먼저,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에 관한 사항도 추가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소비자에 대하여 ①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고지한 경우(당해 고지된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인) 또는 ② 물품, 권리, 서비스, 그 밖의 당해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에 관련하여 장래의 가격, 장래에 있어서 당해 소비자가 수령할 금액 그밖에 장래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경우(당해 제공된 단정적 판단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오인)에 해당하는 행위를 오인을 하고, 이로 인하여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을 권유한 경우 당해 소비자에 대하여 어떤 중요사항 또는 당해 중요사항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비자의 이익이 됨을 알리거나 또는

중요사항에 대하여 당해 소비자의 불이익이 되는 사실(당해 고지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소비자가 통상 생각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당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이에 의하여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비자에 대하여 ①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그 주거 또는 그 업무를 행하는 장소로부터 퇴거하라는 뜻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②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하는 장소로부터 소비자가 퇴거하라는 뜻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로부터 퇴거하지 아니한 경우에 열거한 행위를 함으로써 곤혹하여 이로써 당해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음으로, 사업자가 제3자에 대하여 당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소비자계약을 체결함에 관해 매개할 것을 위탁하고 당해 위탁을 받은 제3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이들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취소는 민법상의 의사표시 착오로 인한 취소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항을 신설할 수 있으며, 취소권의 행사기간에 대하여도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되 당해 소비자계약의 체결 시 부터 5년을 경과한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할 수 있다.

다섯째, 약관규제법 제4조(‘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 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에서 규정한 개별 약정의 우선은 약관에 한정하는 것으로 별도의 조항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여섯째, 약관규제법 제5조제1항(‘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과 제2항(‘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에서 규정한 약관의 해석은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 있다. 예컨대, 소비자계약의 해석이란 제목 하에 ‘소비자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한다.’와 ‘소비자계약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되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일곱째, 약관규제법의 불공정한 약관 조항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은 소비자계약 불공정한 조항으로 고객을 소비자로, 약관을 소비자계약 등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그대로 수용할 수 있다.

여덟째, 약관규제법은 제30조제1항에서 상법 제3편,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약관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대통령령에서 비영리사업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약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서 사실상 ‘상법 제3편 또는 근로기준법의 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서 ‘특정한 거래 분야의 약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라는 규정은 약관에 한정되는 것으로 삭제할 수 있다.

(3) 약관규제법의 폐지와 민법으로의 편입 방안

독일법처럼 약관규제법을 폐지하고 약관에 관한 실체법 조항을 민법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⁷⁷⁾ 그 주요 입법 사항을 살펴보

77) 외국의 입법동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와 다소 있겠지만, 우리의 약관규제법 규정내용을 민법 제3편에 흡수·편입하는 방안은 신중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삼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비교사법 제12권 2호 통권 제29호,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관에 대한 정의 조항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를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개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로 변경하여 약관의 개념과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약관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사업자와 고객이라는 개념을 삭제하고 약관을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모든 자를 규율대상으로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즉 약관규제법에서 사업자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상대 당사자에게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고객이란 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사업자로부터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할 것을 제안 받은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여 나름 사업자와 소비자를 넘어 사업자 사이의 약관을 이용한 계약을 규율하고 있으나, 이와 같은 개념정의는 마치 소비자계약을 전제하고 그 적용대상을 넓히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약관사용자 또는 약관사용자의 상대방(또는 소비자)으로 당사자를 넓게 정의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민법에서 소비자계약을 도입하는 경우 소비자와 사업자라는 법률행위 주체를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 경우 소비자는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를 하는 모든 자연인으로 정의할 수 있고, 사업자는 영업활동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자연인 또는 단체 등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406면). 또 다른 반대 견해로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적 내용통제기능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규정이 다수 내포되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최병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폐지와 변화,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93면).

셋째, 약관규제법은 제15조에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약관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는 약관에 대하여는 약관의 무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을 조항별·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에 이를 편입한다면 입법형식상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②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③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의 약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넷째, 약관규제법의 행정규제에 관한 제3장 약관의 규제, 제4장 분쟁의 조정 등, 제5장 보칙(제30조 제외), 제6장 벌칙은 ‘(가칭)불공정약관규제법’을 제정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편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2. 약관규제법 자체의 주요 개선방안

(1) 약관의 개념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여부

약관규제법 제2조제1호에서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약관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이로 말미암아 약관규제법 제2조제1호 문구를 형식적으로 해석하면, 일회성의 약관은 약관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일정한 형식(문서)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예컨대, 홈쇼핑처럼 무방식의 구두 등에 따른 계약)는 약관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문제점 때문에 일부 견해는 비록 일회성의 약관이라고 할지라도 계약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방이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약관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약관규제법 제2조제1호를

확대해석 하자는 의견도 있다.⁷⁸⁾ 중국적으로 약관규제법 제2조제1호의 문구를 개정할 사안이고 근본적으로는 약관이라는 일정한 형식을 계속 요건으로 할 것인지의 문제로 귀결된다. 다시 말해서 ‘약관’이라는 형식을 버리고 ‘소비자계약’으로 넘어가는 새로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지의 문제와 연결된다.

(2) 일반원칙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여부⁷⁹⁾

약관규제법 제6조제2항은 제6조제1항에 의한 약관조항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을 제시해야 하며, 이러한 차원에서 불공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임의법규’와 ‘계약의 성질’에 따른 규율을 제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⁸⁰⁾ 따라서 제6조제2항제1호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고객에 대하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우보다 불리한 조항”으로 수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약관에 대한 추상적 판단을 쉽게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문제점과 개선 여부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중한 손해배상액 예정의 약관조항 전체를 무효로 할 것이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경우 신의성실에 부합하는 한도에서 그 약관조항의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⁸¹⁾ 그렇지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자체는 이미 신의성실에 반하는 것으로 그 일부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불공정한 약관을 유인할 수

78) 전삼현, 앞의 논문, 197면.

79) 약관규제법 제6조와 제7조 이하의 규정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권대우, 약관의 부당성 규제, 서강법학3, 서강대학교, 2001, 134면 참조.

80) 장경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워크숍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04.18., 10면 참조.

81) 윤진수, 앞의 논문, 406면.

있어서 적절한 것으로 볼 여지가 적다. 다만, 약관규제법 제8조에서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라는 문구에서 너무 포괄적으로 해당 문구를 규정하고 있어서 보다 구체화하는 방안(지연 손해금 이외에 해당 것도 예시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수 있지만 큰 의미는 없는 듯하다. 따라서 현행법을 개선할 여지가 낮아 보인다.

(4) 불공정약관조항의 사용금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여부

약관규제법 제17조의 불공정조항 사용금지의무는 지나치게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17조의2와 연계하여 해석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고,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할 경우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고, 이 주장에 따르면 불공정한 약관에 대한 불이익을 부여하기 이전에 적어도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불공정한 약관을 작성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⁸²⁾ 따라서 사업자에게 약관의 불공정성의 기준과 구체적인 사례 혹은 표준약관과 같은 권장약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주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5) 표준약관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 여부

1992년 약관규제법의 개정에서 표준약관을 도입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용을 지속적으로 권장하여 왔고,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준약관을 스스로 작성하여 그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앞서도 알 수 있듯이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야별로 65개의 표준약관을 권고하고 있는데, 해당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82) 윤용석외 2인, 약관심사제도 발전방향 연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7.9., 134면 참조.

한편, 표준약관의 확산에 관련하여 우려하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2004년 약관규제법 개정에서 표준약관을 강화한 것은 세계적인 약관규제의 추세에 역행한다고 지적하였다. 이 견해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다양한 상품과 거래조건이 통용되도록 하는 것이 그 체제상 적합하고, 그로 인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004년 개정법은 거래조건이나 상품 그 자체를 획일화하겠다는 발상이어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거래조건을 틀에 맞추려는 표준약관의 강화에는 찬성할 수 없다는 논거를 밝혔으며,⁸³⁾ 더 나아가서 2004년 개정에서는 소비자단체소송의 도입 등과 같이 소비자 소송을 용이하게 하는 입법조치를 했어야 함이 타당했을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⁸⁴⁾ 또 다른 견해로 정부의 표준약관 보급 및 확산에 대한 문제점과 표준약관이 완결적인 것이 아니라는 문제점 그리고 표준약관이 사업자 사이의 경쟁을 제한하는 작용을 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견해도 있고⁸⁵⁾, 약관에 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범주에 속하는 문제이기에 이를 규제하는 기관이나 절차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행정적 규제보다는 법원에 의한 사법적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⁸⁶⁾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표준약관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적 다툼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문제될 수 있다. 현시점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권고하고 있는 표준약관은 해당 분야별로 활용에 차이가 있지만 소비자 보호에 적합한 측면도 있어 표준약관의 실태 조사와 국민경제(건전한 경쟁촉진 등) 및 소비자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해당

83) 최병규, 약관규제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경제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05, 66면 참조.

84) 최병규, 위의 논문, 66면.

85) 신영수,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08, 66면 참조.

86) 권오승, 한국의 약관규제, 경쟁법연구 제8권, 한국경제법학회, 2002.2., 590면.

분야별로 적합한 표준약관을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직접 심사하거나 표준약관을 만들어서 보급하는 것 보다는 사업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과 같은 민간기구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제 3 절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단체소송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I. 개 요

현행 소비자기본법은 1980년 1월 4일에 소비자보호법이란 명칭으로 제정되었으며, 그 제정이유로 “상품의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도리에 입각한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의 지위를 확립하기 위하여 사업자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과하고 소비자 이익을 옹호하며 소비자의 자주적이고 합리적인 역할을 조장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⁸⁷⁾ 당시 소비자보호법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자보호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실시하되 이에는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고, ② 국가는 소비자 조직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③ 사업자도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비자보호정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하고, ④ 주무부장관은 주관하는 물품 및 용역의 내용 또는 사용방법에 따른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품의 성분·함량·구조 등에 관하여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⑤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제

87) 소비자기본법의 주된 기본방향은 소비자의 지위변화와 소비자분쟁의 효과적 해결에 있고, “소비자는 더 이상 상대적 약자로서 소극적·수동적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능동적 역할자인 소비자권리실현의 주체로 재정립됐고,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성천·송민수, 앞의 보고서, 15면).

조·수입 또는 포장하는 자는 당해 사업자의 명칭과 해당 물품의 용도·성분·규격·성능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⑥ 사업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공정한 거래를 하도록 하며, ⑦ 소비자보호 및 국민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소비자보호 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소비자보호법’은 2006년 9월27일에 법명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전부개정이 이루어졌는데⁸⁸⁾, 그 개정이유로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개정에서는 첫째,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하였다. 둘째,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

88) 일본은 1968년 소비자보호기본법을 제정하여(현행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피해의 문제를 주로 공법적인 구제를 통하여 해결하려고 하였고, 개별사업법에서도 행정적인 규제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함에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시각과 규제완화라는 법정책 사고의 확산으로 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성천·송민수, 위의 연구보고서, 132면).

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였다. 넷째,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를 권장하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소비자단체소송제도의 도입하였는데,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비자단체·사업자단체·비영리 민간단체가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 등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법원에 금지·중지를 청구하는 소비자단체소송을 도입하고, 소제기의 당사자요건, 소송허가신청 및 확정판결의 효력 등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저질수입상품 등에 따른 소비자 안전위해, 악덕상술·과장광고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소비자 권익침해행위의 방지, 소 제기를 우려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위법행위의 중지,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의 향상과 제품결함의 사후시정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다.⁸⁹⁾

89) 2006년 개정된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지위의 향상과 전자상거래 및 국제거래의 활성화 등 소비생활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정책을 탈피하여 소비자권익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와 같은 소비자기본법의 패러다임 전환은 소비자계약법제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성천·송민수, 위의 연구보고서, 157면).

여기서는 소비자기본법의 단체소송제도에 대하여만 살펴보는 데, 그 이유는 약관과 관련하여 다른 외국의 입법례(독일과 일본)에서 알 수 있듯이 약관에 관한 소송절차에 대하여 특칙을 마련하여 약관규제에 대한 사법심사를 강화하고 소송제기 주체에 대하여도 일정한 소비자단체 등을 규정하여 매우 의미 있는 입법을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비자기본법에서 단체소송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⁹⁰⁾ 2006년 소비자기본법의 전면개정에서 그 이유로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고 밝히고 있는데, 이 전면개정을 통하여 집단소송제도와 구별되는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인데,⁹¹⁾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한 것은 집단소송제도가 기업에 더 많은 부담을 줄 우려가 있어서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였다고 한다.⁹²⁾

90) 단체소송제도에 의한 불공정약관의 통제에 관하여는 이병준·김도년,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 법조 제58권 제3호, 법조협회, 2009, 138~140면 참조.

91) 단체소송은 독일에서 발단된 제도이고, 독일의 단체소송은 소비자 보호분야(부당한 표시·약관·가격인상 등 소비자 보호분야), 환경 또는 행정분야 등에서도 인정된다(김원기·박수영,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전북대학교, 2007, 69면 참조).

92) 집단소송과 단체소송의 차이는 전자의 경우 금전적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이고, 후자의 경우 위법·침해행위의 금지나 중지를 통한 소비자피해 확산의 예방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전자의 경우는 소비자 피해에 대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에 해당하나, 후자의 경우는 소비자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손해배상을 동반하지 아니하고 소송수행단체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상대적으로 기업 부담을 적게 하는 차이가 있다(김원기·박수영, 위의 논문, 72면 참조).

II. 단체소송의 주요 내용

1. 단체소송의 대상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i)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ii)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및 (iii)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②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단체,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i)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피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을 것, (ii)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iii)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iv)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증진 관련 기준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0조).

2. 전속관할

단체소송의 소는 피고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가 있는 곳의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전속한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1항). 이를 외국사업자에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소비자기본법 제71조제2항).

3. 소송대리인의 선임

단체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72조).

4. 소송허가신청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①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② 피고, ③ 금지·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의 침해행위 범위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73조제1항). 이 경우 소송허가신청서에는 소제기단체가 적격단체임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와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의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요청한 서면 및 이에 대한 사업자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소비자기본법 제73조제2항).

5. 소송허가요건 등

법원은 ① 물품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다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②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③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의 침해행위를 금지·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하였을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결정으로 단체소송을 허가한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1항).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 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4조제2항).

6. 확정판결의 효력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와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는 적격단체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①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안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기관에 의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나 증거가 나타난 경우 또는 ② 기각판결이 원고의 고의로 인한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소비자기본법 제75조).

7. 민사소송법의 적용 등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하고(소비자기본법 제76조제1항), 단체소송의 허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편의 규정에 따른 보전처분을 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76조제2항).

Ⅲ. 단체소송 관련 법체계의 개선방안

이상과 같은 소비자기본법상의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 제정당시의 소송남발의 우려와는 달리 단체소송이 제기되는 빈도가 낮다. 따라서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여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불공정한 약관 등으로 인한 소비자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8장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체소송에 관한 조항은 일종의 절차법적인 조항으로 기본법에서 규율하기에는 다소 법체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일본의 소비자기본법⁹³)과

93) 일본의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와의 사이의 정보의 질과 양 그리고 교섭력 등의 격차에 비추어 소비자의 이익의 옹호 및 증진하고, 소비자 권리의 존중 및 그 자립의 지원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이익의 옹호 및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유사하게 소비자관련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단체소송에 관한 절차나 조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 다른 독일이나 일본의 법률에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단체소송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입법화가 필요하다. 결국 2005년에 제정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⁹⁴⁾ 소비자단체소송에 관하여는 (가칭)소비자단체소송법을 제정하여 약관에 관한 절차조항을 민사소송법의 특례로 신설하는 방안 또는 약관규제법에 해당 소송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여 국민의 소비 생활의 안정 및 향상을 확보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은 총 29개의 조항으로 제1장 총칙, 제2장 기본적 시책, 제3장 행정기관 등 및 제4장 소비자 정책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형태로 입법화되어 있다.

94) 2005년 제정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집단소송에 대한 대표적인 특별법에 해당된다. 이 법에서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의 1인 또는 수인(數人)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말한다(같은 법 제2조제1호). 증권관련집단소송의 소(訴)는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 제177조 또는 제179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이들 손해배상청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이어야 한다(같은 법 제3조). 증권관련집단소송은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같은 법 제4조). 증권관련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5조). 이 법은 위에서 살펴본 제1장 이외에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 제3장 소송절차, 제4장 분배절차, 제5장 시행규칙, 제6장 벌칙을 규정하여 소의 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제 4 장 그 밖의 약관규제법제의 주요 내용과 개선방안

제 1 절 개 관

우리나라의 경우 약관규제법 이외에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 약관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예컨대,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상호저축은행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법령은 나름대로 해당 분야의 필요에 따라 약관(또는 표준약관)을 입법화 한 것으로 약관의 도입이나 사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들 개별법령에서 도입한 약관은 해당 분야에 따라 차별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는 약관의 도입 현황과 그 주요 내용을 중심으로 그 체계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 2 절 그 밖의 약관(또는 표준약관)규제 법제의 내용과 문제점

I. 약관의 사용을 권장(또는 권고)하는 유형

1.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1) 현 황

만화사업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에게 지적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9조제1항).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만화사업자가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9조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할 수 있으며(같은 법 제9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사업자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같은 법 제9조제4항).

(2) 행정벌 등

이와 같이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은 만화사업자와 만화가 또는 다른 만화사업자 사이에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마땅히 이를 강제하는 행정벌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표준약관과 관련해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에 사용을 권장하는 수준의 입법에 머물고 있다.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 현 황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지식재산권의 일방적인 양도 요구 등 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같은 법 제12조의2 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① 문화산업 경쟁 환경의 현황 분석 및 평가, ②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③ 그 밖에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의2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과 협의할 거

쳐 문화산업 관련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를 제정 또는 개정하여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12조의2 제3항).

(2) 행정벌 등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통하여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을 뿐이다. 문화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구축하기 위하여 표준약관 또는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고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문화상품의 제작·판매·유통 등에 종사하는 자의 불공정한 약관 사용을 방지할 강제수단(행정벌 또는 형사벌)은 고려하지 않았다.

3.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1) 현 황

정부는 소비자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닝과 관련되는 소비자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이러닝에 관한 소비자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5조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이러닝사업자등이 지키도록 권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제2항).⁹⁵⁾

또한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

95) 약관과 전자상거래에 관하여는 하충룡·이유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약관에 대한 온라인 소비자 행동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 417~425면 참조.

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들에게 그 시행을 권고할 수 있으며, 이러닝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 교육의 실시 및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제3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같은 법 제25조제4항).

(2) 행정벌 등

이와 같이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나름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이러닝과 관련된 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이러닝사업자 및 사업자단체가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권장하는 것과 이러닝 이용에 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공시(公示)를 거쳐 이러닝사업자들에게 그 시행을 권고하는 등 다방면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이와 같은 행동규범과 표준약관을 각각 채택하여 시행하는 이러닝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따른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하는 데 있어 우대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법에서도 이러닝사업자의 불공정한 약관을 이용한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행정벌 등을 강구하지 않았다.

4.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1) 현 황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표준약관을 제정하여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 ①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열람,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한 표준처리절차,
- ② 그 밖에 지능형전력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4조제2항).

(2) 행정벌 등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표준약관을 사용하도록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을 뿐이고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를 별도로 강구하지 않고 있다.

Ⅱ.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의제 유형(건설기계 관리법)

1. 현 황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제1항). 계약의 당사자는 그 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료, 임대차 기간, 그 밖에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서명날인 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2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본다(같은 법 제22조제3항).

2. 행정벌 등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에게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도록 의무를 설정하고 있으며, 계약서에 주요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고 이를 포함한 계약서를 서명날인 하여 서로 주고받은 후 이를 보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 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으로 본다고 규정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문제된다. 즉 표준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을 공정한 것으로 의제하고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자에게 이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으로 만족하는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정된 표준약관을 이용한 경우에 법원이 이 표준약관을 불공정한 것으로 판단한다면 정부(공정거래위원회)가 그 손해 등을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모호하다.

Ⅲ. 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유형

1. 상호저축은행법

(1) 현 황

상호저축은행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① 약관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②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상호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④ 변경명령에 따라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 후 1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

상호저축은행은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고(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회장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상호저축은행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2항). 중앙회 회장은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4항). 금융위원회는 신고 또는 보고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5항).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상호저축은행 또는 중앙회 회장에 대하여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의3 제6항).

(2) 행정벌 등

상호저축은행법에서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자 및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40조제2항).

2. 여신전문금융업법

(1) 현 황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① 금융약관의 내용 중 금융이용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개정하는 경우, ②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금융약관의 내용이 다른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이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금융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④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금

용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 후 10일 안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1항).

여신전문금융회사등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2항).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금융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여신전문금융업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4항). 금융약관의 신고 또는 보고를 받거나 표준약관을 신고 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5항).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의 내용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6항).

금융위원회는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 관련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금융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여신전문금융회사등 또는 여신전문금융업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변경명령을 하기 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7항).

(2) 행정벌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지 아니하고 금융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72조제1항).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 현 황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의 영위와 관련하여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① 약관내용 중 투자자의 권리 또는 의무와 관련이 없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표준약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 ③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약관의 내용이 다른 금융투자업자가 이미 금융위원회에 신고한 약관의 내용과 같은 경우, ④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제1항). 금융투자업자는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제2항). 협회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하여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을 제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조제3항). 협회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후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제4항). 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거나 표준약관을 신고 또는 보고받은 금융위원회는 그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통보받은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제5항).

또한 금융위원회는 약관 또는 표준약관이 이 법 또는 금융과 관련되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그 밖에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또는 협회에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약관 또는 표준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조제6항).

(2) 행정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449조제1항).

4. 전기사업법

(1) 현 황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16조제1항). 산업통상부장관은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제2항).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제3항).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공급약관)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추어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제4항).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6조제5항).

(2) 행정벌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경우 공급약관을 작성하여 미리 인가를 받아야 전기판매사업을 할 수 있기에 처음부터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지 않을 여지가 없다. 따라서 전기사업법은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108조제2항).

5.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1) 현 황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 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제1항).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8조제2항).

(2) 행정벌 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은 ①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②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23조제2항).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현 황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제1항). 방송통신위원회는 약관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56조제2항).

(2) 행정벌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76조제1항).

7. 콘텐츠산업 진흥법

(1) 현 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콘텐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할 수 있는 지침(이하 “이용자보호지침”이라 한다)을 관련 분야의 사업자,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제1항). 콘텐츠사업자는 콘텐츠를 거래할 때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오금의 환불,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콘텐츠 결함 등으로 발생하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약관을 마련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같은 법 제28조제2항). 콘텐츠사업자는 그가 사용하는 약관이 이용자보호지침의 내용보다 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 이용자보호지침과 다르게 정한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

시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28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콘텐츠 거래에 관한 약관의 견본을 마련하여 콘텐츠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제4항).

(2) 행정벌

콘텐츠산업 진흥법에서는 콘텐츠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권고 또는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또한 시정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같은 법 제28조제5항).

8. 해운법

(1) 현 황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11조의2 제1항).

(2) 행정벌

해운법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같은 법 제19조제1항).

이와 같이 해운법의 경우 약관 사용에 매우 강력한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점에 특이하다.

9.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 현 황

운송사업자는 운송약관을 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같은 법 제6조제1항). 국토해양부장관은 협회 또는 연합회가 작성한 것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화물운송에 관한 표준이 되는 약관(표준약관)이 있으면 운송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제2항).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는 때에 표준약관의 사용에 동의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같은 법 제6조제3항).

(2) 행정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같은 법 제70조제2항).

제 3 절 그 밖의 약관규제법제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약관규제법에 따른 약관 이외에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약관(표준약관)의 도입과 사용에 대하여는 법률 차원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존재한다. 다만, 이들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관의 경우 그 도입강제 및 이용권고 등의 방식은 분야별로 차이가 있는데, 해당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임기응변식으로 필요에 따라 약관의 도입이나 이용 등을 규정한 것도 있어서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첫째, 약관사용을 권고하는 입법으로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

한 법률에서는 표준약관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있고 그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데, 이 이상의 강제방안에 대하여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이터닝산업 발전 및 이터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표준약관의 작성 및 활용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고 표준약관을 채택하여 사용하는 이터닝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상·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법률에서 상호 간에는 표준약관의 사용에 대하여 입법 상으로 차별할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호 일치 내지는 조화로운 입법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표준약관의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모두 재정상·행정상 우대조치를 하자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표준약관의 사용을 촉진할 수 있는 민사적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등의 계약관계로 처리하는 방안이나 표준약관의 제정 주체를 민간기구 등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약관을 계약으로 편입하는 의제입법으로 건설기계 관리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경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그 효력에 대하여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표준약관을 사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공정하게 체결한 계약으로 본다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물론 표준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식에는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셋째, 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입법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전기사업법,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약관의 신고의무, 약관의 제·개정 시 미신고, 약관의 비치의무, 약관의 설명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분야의 특성에 따라 과태료에 차이를 두고서 처분하여 약관을 강제하고

있다. 그런데 콘텐츠산업 진흥법의 경우는 약관과 관련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형사벌(벌금 또는 징역)을 부과하고 있는 점이 특이한데, 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소비자의 보호에 대하여 과도한 입법을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제 5 장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 독일, 미국, 일본의 입법 동향을 분석하면, 소비자법(약관법)에서는 약관에 대한 규제를 넘어 소비자계약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관련된 특별한 소송절차에 관하여도 민사소송법과 분리하여 별도로 입법화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약관규제법은 외국의 입법사례에 비추어 보면, 유일한 독립입법에 해당되고 행정기관의 역할과 행정규제가 발달되어 있는 특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약관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국가법령을 선진화한다는 차원에서 약관규제법의 개편방안을 고려할 수 있고 그 방안으로 약관규제법을 전면 개정하는 방안, (가칭)소비자계약법을 제정하여 편입하는 방안, 그리고 민법으로의 편입하는 방안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셋째, 현행 약관규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은 관련 판례 등의 분석하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우나, 일부 조항의 모호성이 문제되어 개선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약관 작성과 보급 등에 있어서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사업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장의 자율적인 통제기능 등을 강화하여 약관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줄여 법적 다툼에서 자유로워 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분야별로 개별 법령에서 도입하고 있는 약관(또는 표준약관)은 대체적으로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약관의 사용을 강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필요 이상으로 차별화되어 있어서 일부 조항의 조정과 약관의 작성 및 사용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권장하기 보다는 사업자단체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부 록

부 록 I 유럽연합의 입법지침

소비자 계약에 있어서 불공정조항에 관한 입법지침 (93/13/EEC, 1993년 4월 5일)

유럽경제공동체 (European Communities) 회의는

유럽공동체 (European Economic Community) 설립 조약 제100조 A와 유럽위원회 (The European Commission)의 제안을 참작하고,

유럽연합의회 (European Parliament)와 협조하여,

경제사회평의회(Economic and Social Committee)의 의견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 이 지침을 채택한다.

1992년 12월 31일 이전에 역내시장 (internal market)을 순차적으로 형성할 목적으로 조치들을 채택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역내시장이 상품,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이 경계 없이 자유로이 이동하는 지역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상품의 매도인(seller)과 서비스의 공급자(supplier) 상호간, 또는 그들과 소비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이 크게 상이하야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국내시장(national market)이 서로 달라지고, 매도인과 공급자가 타회원국에서 판매나 제공을 할 때 현저한 경쟁의 왜곡이 야기된 경우;

특히, 소비자계약상 불공정조항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이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조항이 포함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회원국에 있는 경우;

대체적으로 소비자가 자국 이외의 회원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규율하는 법규범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이러한 법률의 부지 때문에 소비자들이 자국 이외의 회원국에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직접 거래하는 것을 저해하게 될 경우;

역내시장의 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경우와 자국 이외의 회원국 법률이 규율하는 계약에 따라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공동체) 시민을 소비자로서 보호하기 위하여 불공정조항을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매도인과 공급자가 상품을 판매하고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때문에 자국과 역내시장 전역에서 도움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고 공동체 시민이 소비자로서 가지는 선택권을 확대하는데 일조한 경우;

소비자 보호 및 정보 정책이라는 공동체의 두 프로그램이 계약의 불공정조항에 관하여 소비자보호의 중요성을 명백히 보여준 경우;

이러한 소비자보호는 공동체의 기준에 부합하거나 그 기준을 직접 채택한 법률 또는 규칙에 의해 규정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보호가 공동체 수준에 부합하거나 또는 그 수준에 이르는 정도 법률과 규칙으로 직접 채택되어 규정되어야만 하는 경우;

“소비자의 경제적 이익의 보호(Protection of the economic interests of the consumers)”라는 제목 아래 규정된 원칙에 따라, 그러한 프로그램들에 언급된 바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의 구매자(acquirer)는 특히 일방 당사자에 의한 표준계약 및 계약상 필수적 권리가 불공정하게 배제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불공정조항의 문제에 있어서 보다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가 통일규범을 채택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는 경우; 그러한 규범들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와 소비자 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그 중에서도, 결과적으로 고용 계약, 상속권 관련 계약, 가족법상의 권리에 관한 계약 및 회사의 법인이나 조직에 관한 계약 또는 조합계약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만 하는 경우;

소비자는 구두로 체결된 계약이든 서면에 의해 체결된 계약이든 상관없이, 그리고 후자의 경우 계약 조항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동등한 보호를 받아야 하는 경우;

국내법은 부분적인 조화만 예정된 것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특히,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계약 조항이 이 지침에 의해 규율되는 경우; 회원국은 조약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 지침상의 규정들보다 엄격한 국내조항을 통해 소비자들을 더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도록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 경우;

소비자계약 조항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확정하는 회원국의 법률 또는 규제조항(statutory or regulatory provision)이 불공정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러므로 회원국이나 공동체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상의 강행규정 또는 규제조항 및 원칙 또는 규정들을 반영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률상 제1조(2)의 ‘강행 규정 또는 규제조항’이라는 용어가 당사자 간에 다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계약 당사자들에게 적용될 원칙을 포함하는 경우;

이 지침이 특히 공적인 성질의 거래, 영업, 또는 전문적인 직업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회원국이 불공정조항을 포함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하여야만 하는 경우;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평가 기준을 일반적인 방법으로 확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상의 기준에 따라,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평가가 특히 이용자들 간 연대를 고려하는 공동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인 성질의 매매 또는

부 록

제공 행위여서 관련된 다른 이익을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보충해야 하는 경우; 선의(good faith)를 평가할 때 소비자가 조항에 합의할 것을 유도하였는지 여부 및 상품 또는 서비스가 소비자의 특별한 주문에 의해 판매 또는 제공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특별한 고려가 당사자 간 교섭지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선의 요건이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타방 당사자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정당하게 거래한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해서 충족될 경우;

이 지침의 별표에 열거된 조항의 목록은 예시적인 성질만 가지며, 지침의 (효력) 최소성에 기인하여 이들 조항의 범위를 회원국의 국내법에 따라 확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이 계약 조항의 불공정성을 평가하는데 영향을 가지는 경우;

지침의 목정 상 불공정성 평가는 계약의 주된 목적이나 제공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가격 비율을 명시하는 조항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경우; 계약의 주된 목적과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가격 비율이 다른 조항의 공정성을 평가하는데 고려되는 경우; 보험계약의 경우 이러한 평가는 소비자가 지불한 프리미엄 산정에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 위험과 보험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은 평가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할 경우;

계약은 평이하고 알기 쉬운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소비자는 계약상 모든 조항을 실질적으로 검토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며, 의심스러울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회원국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 불공정조항이 사용되지 않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불공정조항이 있는 경우 그 조항은 소비자를 구속하지 아니하고, 만약 불공정조항 없이 계약이 존속될 수 있다면 계약은 당사자를 계속 구속한다.

소비자가 비회원국 법률을 해당 계약의 준거법으로 명시함으로써 소비자가 이 지침상의 보호를 받지 못할 경우;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이 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경우;

회원국 법률상 정당한 이해를 가지는 경우, 개인이나 단체는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 상용되는 계약조항 및 불공정 조항에 관하여 법원이나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행정당국에 소송절차나 적절한 소송 개시를 할 수 있는 기관을 갖추어야 한다; 하지만, 소송이 가능한 경우라도 각각의 사적 영역에서 일반 조건의 사전증명을 요하지 아니한다.

회원국의 법원이나 행정 당국은 소비자계약의 불공정조항의 계속적 적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1 조

1. 이 지침의 목적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조항에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규칙 및 행정규칙을 근사화(approximate) 하는 데 있다.
2. 강행규정 혹은 규제조항을 반영하는 계약조항과 회원국 또는 공동체가 당사자인 국제협약상의 규정이나 원칙은 이 지침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제 2 조

- 이 지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a) ‘불공정조항’이란 제3조에서 규정된 계약조항을 말한다.
 - (b) ‘소비자’란 이 지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자기의 거래, 영업 혹은 전문적인 직업의 범위 밖이라고 볼 수 있는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 (c) ‘매도인 또는 공급자’란 이 지침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계약에 있어서 경영의 공사를 묻지 않고 자기의 거래, 영업, 전문적 직업에

관한 목적을 위하여 활동하는 모든 자연인 혹은 법인을 말한다.

제 3 조

1.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계약조항은, 선의 요건에 반하여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현저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2. 조항이 사전에 작성되고 소비자가 그로 인하여 그 조항의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된 때, 특히 사전에 작성된 표준약관에 의한 계약일 경우, 언제나 개별적으로 교섭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어떤 조항의 특정 내용이나 어떤 조항이 개별적으로 교섭되었다는 사실은 전체적으로 평가했을 때 그 계약이 사전에 작성된 표준계약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나머지 부분에 본 조항이 적용되는 것을 배제하지 못한다.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약관 조항(standard term)이 개별적으로 교섭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3. 별표는 불공정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조항을 예시적으로 열거한 것이다.

제 4 조

1. 제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조항의 불공정성은 계약이 체결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을 고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계약체결에 이르게 된 일체의 사정과 그 계약의 다른 조항이나 그 계약의 전체가 된 다른 계약 등을 고려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 조항의 불공정성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그 조항이 평이하고 명료한 용어로 서술되어 있는 한, 그 계약의 주된 목적물에 관한 정의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비추어 그 대가 및 보수가 적정하지 여부를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

제 5 조

소비자에게 제시된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서면에 의한 계약인 경우, 그 조항은 언제나 평이하고 명료한 용어로 작성해야 한다.

조항의 의미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해석이 우선된다. 이 해석의 원칙은 제7조 (2)에서 규정한 절차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 6 조

1. 회원국은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에 사용된 불공정조항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국내법이 허용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소비자를 구속하지 않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만약 불공정조항 없이 계약이 계속될 수 있다면 그 계약이 당사자를 계속하여 구속하는 것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2. 소비자가 계약 준거법으로 비회원국의 법을 선택하더라도 회원국의 영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한, 회원국은 이 지침에 의한 보호를 상실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 7 조

1. 회원국은 소비자와 경쟁자를 위하여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소비자와 체결한 계약의 불공정조항의 계속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2. 제1항에서 언급된 수단은 소비자를 보호하는 본국의 법률상 정당한 이해를 가지는 개인이나 단체가 재판이나 일반적으로 사용된 계약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의 적격이 있는 행정기관의 준거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이나 단체는 불공정조항의 계속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수단을 적용할 수 있다.

부 록

3. 국내법에 따라 제2항에 규정된 법률적 구제는 동일한 일반계약 조항 또는 유사조항을 사용하거나 권고하는 동일한 경제분야의 다수의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대하여 개별적·연대적으로 구제될 수 있다.

제 8 조

회원국은 소비자를 최대한 보호하기 위하여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조약에 상응하는 가장 엄격한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제 9 조

위원회는 제10조(1) 상의 날짜 이후 최소한 매 5년마다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하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각각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1. 회원국은 이 지침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 규칙 및 규제조항을 1994년 12월 31일까지 발효시켜야 한다.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1994년 12월 31일 이후에 체결된 모든 계약에 적용된다.

2. 회원국이 이 조치들을 채택할 때에는 이 지침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공식적인 간행(official publication) 시에 그러한 언급이 수반되어야 한다. 지침을 언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회원국이 정한다.
3. 회원국은 이 지침이 적용되는 분야에서 채택된 국내법 규정을 위원회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

이 지침은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다.

룩셈부르크, 1993년 4월 5일

이사회 N. HELVEG PETERSEN

별 표

1. 제3조 제3항의 세부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a)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작위 혹은 부작위로 인하여 소비자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법적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규정
 - (b) 계약상 채무에 관하여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해 전부 혹은 일부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이 발생한 경우 소비자가 행사하는 청구권과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귀속된 채권을 상계하는 선택권을 포함하여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한 매도인, 공급자 또는 그 밖의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갖는 법적 권리를 부당하게 배제 하거나 제한하는 규정
 - (c)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 의한 서비스공급 규정의 실현이 오로지 그의 의사에만 달려 있는 조건에 따르는 한편 소비자를 구속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규정
 - (d)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배액을 상환한 것을 규정하지 않는 반면, 소비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귀속시키도록 허용하는 규정
 - (e) 의무이행을 해태한 소비자에게 고액의 위약금 지불을 요구하는 규정
 - (f)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는 계약의 임의해제권을 부여하면서 소비자에게는 이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와 매도인과 공급자 자신이 계약을 해제한 때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에 관하여 지급할 금액을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귀속시키는 규정
 - (g) 중대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합리적인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h) 기간을 정한 계약의 경우, 부당하게 빠른 기한 내에 소비자가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계약이 자동적으로 연장되도록 하는 규정
- (i) 계약체결 이전에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갖지 못한 조항에 대하여 소비자를 확정적으로 구속시키는 규정
- (j)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계약에 특정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조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k)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제공해야 할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질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l) 계약체결시 합의된 가격에 비하여 최종가격이 현저하게 높은 경우 상품의 가격이 물품 인도 시에 확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거나 매도인과 공급자가 대금을 증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응하는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규정
- (m) 제공된 상품이나 서비스가 계약이행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혹은 계약조항의 독점적인 해석권을 매도인 또는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규정
- (n) 매도인 또는 공급자의 대리인에 의해 이루어진 약속(commitment)에 대하여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이를 준수할 의무를 제한하거나 그 약속의 이행에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는 규정
- (o)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그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모든 채무의 이행을 부담시키는 규정
- (p) 소비자에게 보증의 감소를 초래하는 경우에도 소비자의 동의 없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를 타인에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 (q) 소비자로 하여금 법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중재에만 따르도록 요구하고 소비자 측 증거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계약의 상대방에게 부여된 법률에 따른 입증책임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킴으로써

소송 기타 법적 구제수단을 행사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리를 배제하거나 방해하는 규정

2. 제(g), (j) 및 (i) 각 호의 범위

- (a) 1. (g)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통지 없이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는 계약의 상대방 기타 계약당사자에게 이 사실을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 (b) 1. (j)항은 금융서비스 공급자가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통지 없이 소비자가 지급할 이율이나 변제기 또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기타 대가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근거가 되는 규정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급자는 계약의 상대방 기타 계약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소비자는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c) 1.의 (g), (j) 및 (l)항은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 가격이 매도인 또는 공급자가 지배하지 않는 주식시장의 상장이나 지수 또는 금융시장 이율의 변동에 연결되어 있는 양도 가능한 담보, 금융증권,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 외국통화, 여행자수표 또는 국제우편환의 매매계약
- (d) 1. (l)은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가격지수화 조항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다만, 가격을 변경하는 방식은 명시되어야 한다.

2. 소비자이익 보호를 위한 금지명령에 관한 입법지침(1998년 5월 19일)

유럽연합의회와 각료이사회는 유럽공동체 조약 제100a조, 위원회의 제안서, 및 유럽 경제사회평의회의 의견서에 따라 조약 제189b조에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다음의 경우 이 지침을 채택한다.

- (1) 별첨에서 열거되어 있는 지침에서 소비자이익보호에 관한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다.
- (2) 위 지침들의 준수보장과 관련하여, 자국과 공동체에서의 현행 구조로는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collective interest)에 반하는 침해를 적기에 종료할 수 없다. 여기에서 집단적 이익은 침해를 입은 소비자의 누적적인 이익은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는 침해에 의해 손해를 입은 개인이 제기하는 소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3) 당해 국내조항에서 불법으로 규정되는 관행들의 중지를 목적으로 하는 한, 국내 조치가 유럽공동체조약과 양립가능하고 기존의 지침들의 적용 범위 내에 포함된다면, 그러한 관행들이 발생했던 곳보다 회원국내에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기존의 지침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보호조치의 내용을 내포하며, 국내조치를 지침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 유효성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 (4) 이러한 문제점들로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저해할 수 있고, 모든 집행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불법적인 관행의 원인을 또 다른 국가로 이전하기 충분하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이로 인해서 경쟁의 왜곡이 발생한다.
- (5) 이러한 문제점들로 역내시장에서 소비자의 신뢰가 저하되고,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 및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독립된 공공기관의 행동 범위가 제약될 수 있는데, 이는 유럽공동체 법률을 위반하는 관행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 (6) 이러한 관행은 회원국들 간에 발생하기도 한다. 불법적인 관행들이 영향을 주는 국가에 관계없이 앞서 언급했던 불법적인 관행의 중지하도록 하는 국내조항의 근접성(approximation)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관할권과 관련하여, 본 지침은 국제사법, 회원국 간의 시행중인 조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유럽공동체협약에서 비롯

되는 회원국들 간의 일반적인 의무, 특히 역내시장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는 관련 의무들을 존중한다.

- (7) 예상되는 제재의 목적은 유럽공동체에 의해서 달성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유럽공동체에게는 제재의 필요가 존재하게 된다.
- (8) 유럽공동체조약 제3b조의 세 번째 단락에 의하면 유럽공동체는 조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초과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동등한 효력을 갖는 서로 다른 옵션들 중에서 회원국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능한 한 국내법 체계의 특징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지침 제2조에서 언급하고 있는 절차에 관한 규정을 담당하는 법원이나 행정당국은 이전 결정의 효력에 대해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 (9) 옵션 중 하나에서 본 지침에서 소송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할 특별한 책임이 있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독립적인 공공기관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른 옵션에서는 국내법에서 규정된 기준에 따라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을 보호할 목적을 갖는 단체들에게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10) 회원국은 본 지침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관 및(또는) 단체를 지정하는 두 가지 옵션 중에서 선택을 하거나 또는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다.
- (11) 유럽공동체 내의 침해에 대해서는 상호인정(mutual recognition)의 원칙이 위 기관 및 단체에 적용되어야 한다. 회원국은 국내 기관의 요청과 지침의 규정에 따라 자국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국내 기관의 명칭과 목록을 유럽위원회에 전달하여야 한다.
- (12) 위원회는 적격을 갖춘 기관의 목록을 유럽연합 공식관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 반하는 진술이 공개되기 전까지 책임기관은 그 명칭이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한 법적 권리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3) 회원국들은 피고측에 쟁점이 되는 침해를 중단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금지명령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는 당사자에게 사전 협의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이러한 사전협의를 회원국들이 지정하는 독립된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14) 회원국들의 의무적인 사전협의를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경우, 2주간의 기간은 협의요청을 받은 때로부터 기산하고, 신청자는 그 이상의 기간의 지체 없이 적격의 법원과 행정당국에 제소할 수 있다.
- (15) 유럽위원회는 본 지침의 기능에 대하여 특히, 사전협의를 범위 및 운영에 관하여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
- (16) 이 지침의 적용은 유럽공동체의 경쟁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1 조 범 위

- 1. 이 지침은 역내시장의 원활한 기능을 보장할 목적으로 [별표 I]에 열거된 지침에 근거한 소비자의 집단적 이익 보호를 위한 제2조의 금지명령 소송과 관련된 회원국의 법률, 규칙, 그리고 행정규칙 등을 근사화(approximation)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위반행위(infringement)”는 회원국이 국내법 질서 속에서 법률로 전환함에 있어서 제1항이 규정하는 집단적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별표 I] 에 열거된 지침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제 2 조 금지명령(injunction)의 소

- 1. 회원국은 제3조에 개시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격 법원이나 행정당국을 지정하여야 한다:
 - (a) 위반행위의 중단 또는 금지를 요청하는 적절한 약식절차를 청구하는 경우

- (b) 결정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형태로 공개하고 그 위반행위의 지속적인 효과를 제거할 목적으로 하는 시정명령을 청구하는 경우
 - (c) 허가에 관한 경우에 법원이나 행정 당국이 정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행지체 일수에 따라 정해진 금액 또는 국내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패소한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국고에 귀속시키거나 국내법이 정하는 수혜자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경우
2. 이 지침은 적용가능 한 법률, 말하자면 통상 위반행위가 발생한 회원국의 법률 또는 위반행위의 효력이 발생한 회원국의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제사법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 조 소제기의 책임기관

“책임기관”이란 특히, 다음의 경우와 같이 제1조에 언급된 규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절한 이해를 가지며 회원국의 법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된 모든 조직 혹은 단체를 말한다.

- (a) 제1조에 규정된 이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하나 혹은 그 이상의 독립된 공공기관;
- (b) 국내법 기준에 따라서 제1조에 언급된 이익을 보호할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들.

제 4 조 공동체 내에서의 위반행위

1. 각 회원국은 그 회원국 내에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이 조 제3항이 규정하는 목록을 제시하고, 다른 회원국의 어떠한 책임기관이라도 그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2조의 법원이나 행정당국에 적용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법원이나 행정당국은 이 목록을 책임기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증거로서 받아들여야 하고, 이는 책임기관이 특정한 사안에서 취

한 조치가 정당한지 여부를 조사할 법원 또는 행정당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공동체 내에서의 위반행위가 일어난 경우, 회원국은 회원국의 책임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 기관이 제2조에 근거한 제소 적격을 갖추었음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는 국내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부여된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회원국은 책임기관의 명칭과 목적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제2항의 책임기관의 상세한 목적과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목록은 유럽연합 공식관보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 목록은 6개월마다 갱신하여야 하고, 변경 사항은 지체 없이 게재하여야 한다.

제 5 조 사전 협의

1. 회원국은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우선 피고와 협의하거나 피고 및 금지명령이 청구된 회원국의 제3조(a) 범위에 속하는 책임기관의 양자와 협의한 이후에 이 절차를 개시하는 효력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금지명령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책임기관과 협의할지 여부는 회원국의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 요청이 접수된 때로부터 2주 이내에 그 위반행위가 중단되지 않을 경우에 당사자는 더 이상의 지체 없이 금지명령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회원국이 채택한 사전 협의 규정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유럽연합 공식관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 6 조 보 고

1. 위원회는 매 3년마다 이 지침의 적용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하며 최초의 보고는 늦어도 2003년 7월 2일 이전에 유럽연합의회와 각료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첫 번째 보고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상업적·산업적·기술적 및 전문적 활동을 하는 자연인의 집단적 이익의 보호에 관한 이 지침의 범위;
 - [별표 I] 에 열거된 지침에 따라 정해진 이 지침의 범위
 - 제5조에 규정된 사전 협의가 소비자의 효율적인 보호에 기여했는지 여부

이 보고서는 이 지침의 개정 시에 첨부되어야 한다.

제 7 조 광범위한 제소권에 관한 조항

이 지침은 회원이 국내에서 적격의 기관 또는 자연인에게 보다 광범위한 제소권을 부여하는 규정을 채택·존속시키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제 8 조 이 행

회원국은 이 지침이 범위 내에서 채택한 국내법 규정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조 폐 기

[별표 II] Part A에 따라 수정됨으로써 지침 98/27/EC은 폐기하며, 이는 [별표 II] Part B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침의 국내법상 전환 및 적용에 관한 기한의 제한에 관한 회원국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0조 발 효

이 지침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11조 수신인

이 지침은 회원국을 수신자로 한다.

이 지침은 스트라스부르크에서 2009년 4월 23일 성안하였다.

부 록

[부 록] 제1조(1)에서 언급한 지침의 목록

1. 사업권유거래지침⁹⁶⁾,
2. 소비자신용지침⁹⁷⁾,
3. TV광고지침⁹⁸⁾,
4. 패키지여행지침⁹⁹⁾,
5. 불공정소비자계약지침¹⁰⁰⁾,
6. 원격계약지침¹⁰¹⁾,
7. 소비재매매 및 보증지침¹⁰²⁾,
8. 정보사회 전자거래지침¹⁰³⁾,
9. 인체사용의약품지침¹⁰⁴⁾,
10. 소비자원격금융서비스지침¹⁰⁵⁾,

96) Council Directive 85/577/EEC of 20 December 1985 to protect the consumer in respect of contracts negotiated away from business premises

97) Council Directive 87/102/EEC of 22 December 1986 for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concerning consumer credit

98) Council Directive 89/552/EEC of 3 October 1989 on the coordination of certain provisions laid down by law, regulation or administrative action in Member States concerning the pursuit of television broadcasting activities

99) Council Directive 90/314/EEC of 13 June 1990 on package travel, package holidays and package tours

100) Council Directive 93/13/EEC of 5 April 1993 on unfair terms in consumer contracts

101) Directive 97/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0 May 1997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distance contracts

102) Directive 1999/4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5 May 1999 on certain aspects of the sale of consumer goods and associated guarantees

103) Directive 2000/3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8 June 2000 on certain legal aspects on information society services, in particular electronic commerce, in the internal market (Directive on electronic commerce)

104) Directive 2001/8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6 November 2001 on the Community code relating to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105) Directive 2002/65/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September 2002 concerning the distance marketing of consumer financial services

11. 불공정영업관행지침¹⁰⁶⁾,
12. 역내서비스지침¹⁰⁷⁾
13. 시분할 소비자보호지침¹⁰⁸⁾

106) Directive 2005/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May 2005 concerning unfair business-to-consumer commercial practices in the internal market

107)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108) Directive 2008/122/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January 2009 on the protection of consumers in respect of certain aspects of timeshare, long-term holiday product, resale and exchange contracts

부 록 II 독일의 보통거래약관규제법

(Gesetz zur Regelung des Rechts der Allgemeinen
Geschäftsbedingungen, 2002)

제 1 장 실체법규정

제 1 절 일반규정

제 1 조(개념정의) ① 보통거래약관이란 계약의 일방당사자(“약관사용자”)가 다수의 계약을 위하여 미리 작성한 것으로서 계약체결시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제시하는 모든 계약조항을 말한다. 그 조항이 외형상 별개 계약의 구성부분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그 범위가 어떠한지, 어떠한 문체로 작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계약이 어떠한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②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항을 개별적으로 교섭하여 정한 경우에는 보통거래약관이 아니다.

제 2 조(계약에의 편입) ① 아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통거래약관은 계약의 구성요건이 된다.

1. 계약체결시에 약관사용자가 상대방 당사자를 명시적으로 또는 계약의 성질상 그 명시적인 지명이 어려워도 그 지명이 가능하다면, 계약체결의 장소에서 또렷하고 명시적인 게시를 통하여 지명되고,
 2. 상대방 당사자에게 그 약관내용을 인식하고 있음이 추정되고, 그 상대방 당사자가 그 유효성에 동의하고 있는 경우.
- ② 계약당사자는 일정한 유형의 법률행위에서는 제1항에서 정하여진 요건을 준수하여 특정 보통거래약관의 효력을 미리 약정할 수 있다.

제 3 조(의외조항) 제반 사정, 특히 계약의 외적 현상 형태에 비추어 이례적이어서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이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없는 보통거래약관 조항은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는다.

제 4 조(개별약정의 우선) 계약의 개별약정은 보통거래약관에 우선한다.

제 5 조(불명확조항) 보통거래약관의 해석에서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약관사용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된다.

제 6 조(불편입시 및 무효시의 법률효과) ① 보통거래약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계약은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다.

② 약관조항이 계약의 구성부분이 되지 않거나 무효인 경우에 계약의 내용은 법률규정에 따라 정해진다.

③ 계약의 유지가 제2항에서 정하여진 변경을 고려하더라도 일방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한 때에는 그 계약은 효력이 없다.

제 7 조(회피금지) 본법은 그 규정이 다른 형태로 회피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 2 절 무효조항

제 8 조(내용통제의 한계) 제9조 내지 제11조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보충된 규정에 의하여 합의된 보통거래약관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 9 조(일반조항) ① 보통거래약관의 규정은 그것이 신의성실의 요청에 반하여 부당하게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을 부당하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이다.

- ② 다음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불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규정이
1. 본질적 근본이념에서 벗어나서 일치하지 않거나, 또는
 2. 계약의 성질에서 기인한 본질적 권리의무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계약목적의 성취가 위태롭게 되는 때

제10조(평가 가능한 금지조항) 보통거래약관 중 특히 다음의 것은 무효이다.

1. (승낙기간과 이행 기간) 약관사용자가 청약의 승낙이나 거절 또는 급부의 실행에 관하여 부당하게 길거나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한 기간을 유보한 조항; 제361조 1항, 제361b조 2항에 의한 철회기간 또는 반환기간의 경과 후에 비로소 급부할 것을 유보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유예기간) 약관사용자가 실행하여야 할 급부에 관하여 민법 제326조 1항에 반하여 부당하게 길거나, 충분히 명확하지 아니한 유예기간을 유보하는 내용의 규정.
3. (해제권유보) 약관사용자가 계약에서 제시한 실질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의무를 면하게 하는 권리의 합의; 계속적 채권채무관계에는 적용이 없다;
4. (변경권유보) 약정된 급부를 변경하거나 그와 다른 급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약관사용자의 권리에 관한 합의로서, 약관사용자의 이익만의 고려 하에 변경합의가 계약상대방에게 예견될 수 없는 경우
5. (의제 된 의사표시)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계약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표명되었거나 또는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규정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데, 그것은
 - a) 명시적 의사표시를 위하여 상당한 기간이 계약상대방에게 주어지고,
 - b) 약관사용자가 그 조항에서 정해진 그의 행태의 효과를 그 기간의 개시 시에 계약상대방에게 지적할 의무를 지는 경우.

6. (도달의 의제)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약관사용자의 의사표시가 계약상대방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7. (계약의 청산) 일방당사자가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에, 약관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
 - a) 물건의 권리의 사용·수익 또는 이행된 급부에 대하여 부당하게 높은 보상 또는,
 - b) 부당하게 높은 비용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
8. (급부의 조달불가능) 약관사용자가 급부를 조달할 수 없으면 계약이행의무를 면할 수 있음을 유보한 약정이 제3호에 의하여는 허용되더라도 그가 다음 사항들을 부담하지 아니하는 경우,
 - a) 계약상대방에게 조달불가능에 관하여 지체 없이 알릴 의무, 및
 - b) 계약상대방의 반대급부를 지체 없이 상환할 의무

제11조(평가가능성이 없는 금지조항) 보통거래약관에서 다음의 규정들은 무효이다.

1. (단기적 가격인상) 계약체결 후 4개월 이내에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상품이나 급부의 가격인상을 예정하는 규정. 다만, 본 호는 계속적 채무관계의 범위 내에서 인도 또는 제공되는 상품이나 이행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이행거절권)
 - a)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이 민법 제320조에 의하여 가지는 이행거절권이 배제 또는 제한되거나 또는,
 - b)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에게 속하는 유치권이, 동일한 계약관계에 근거하고 있는데도, 배제 또는 제한되거나 특히 약관사용자에 의한 하자의 인정에 좌우되도록 하는 내용의 규정
3. (상계금지) 다툼이 없거나 기관력이 발생된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 할 권한을 약관사용자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박탈하는 내용의 조항;

4. (최고, 기간설정) 약관사용자에 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최고 하거나 그에게 급부 또는 추완을 위하여 기간을 설정할 법률상 책무를 면하게 하는 조항;
5. (일괄손해배상약정) 약관사용자의 손해배상 또는 가치감소전보의 청구권에 관한 일괄청구의 약정에 있어서
 - a) 일괄약정액이 약정의 대상이 된 경우에 있어서 사물의 통상적 경과에 비추어 예견할 수 있는 손해 또는 통상 발생하는 가치 감소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 b) 상대방 당사자가 손해 또는 가치감소가 발생하지 않았다거나 일괄약정액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증명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경우;
6. (계약별) 급부를 수취하지 않거나, 그 수취가 지체되는 경우, 지급이 지체된 경우 또는 상대방 당사자가 계약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약관사용자에게 계약별로서 위약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조항.
7. (중과실에 대한 책임) 약관사용자의 중과실에 의한 계약위반 또는 약관사용자의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의 배제 또는 제한 : 본 호는 계약체결상의 의무위반에 기한 손해에도 적용된다.
8. (지체, 불능) 약관사용자의 이행지체 또는 그에게 책임 있는 이행불능의 경우에,
 - a) 계약상대방의 계약해제 권리가 배제 또는 제한되거나,
 - b) 계약상대방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배제 또는 제7호에 반하여 제한되는 내용의 조항;
9. (일부지체, 일부불능) 약관사용자의 일부이행지체의 경우에 또는 그에게 책임 있는 일부이행불능에 있어서, 계약의 일부이행이 계약상대방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 계약상대방의 전 채무의 불이행

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요구하거나 전체 계약의 해제권을 배제하는 조항;

10. (하자담보책임) 신품인 물건의 인도 또는 급부에 관한 계약에서,
 - a) (배제 또는 제3자에게의 전가)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대체물인도청구권에 관한 약관사용자에 대한 하자담보청구권이 전체 또는 일부분에 관하여 배제되거나, 제3자에 대한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한정하거나, 또는 사전에 제3자의 재판상 청구에 좌우되도록 하는 조항;
 - b) (하자보수에의 한정) 약관사용자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또는 대체물인도의 전체 또는 일부에 한정한다는 내용의 조항으로서, 추완이 실현되지 아니하면 감액할 권리, 또는 건축급부가 하자담보책임의 목적이 아닌 경우에 상대방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적으로 유보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c) (하자보수 비용) 하자보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비용 특히 운송비, 여비, 인건비, 자재비 등을 부담할 하자담보책임 있는 약관사용자의 의무를 배제 또는 제한하는 내용
 - d) (하자제거의 보류) 하자의 제거 또는 하자 없는 물건의 대체인도를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대금일부의 선지급에 의해서 좌우되도록 하는 내용을 약관사용자가 정한 조항.
 - e) (하자통지의 제척 기간) 약관사용자가 다른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명백하지 아니하는 하자의 통지에 관하여 상대방 당사자에 대하여 법정 하자담보청구권 소멸시효보다 짧게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조항;
 - f) (하자담보기간의 단축) 법정의 하자담보기간을 단축하는 조항.
11. (보장된 속성에 대한 책임) 매매계약, 도급계약, 제작물공급계약에 있어서 보장된 속성의 흠결을 원인으로 민법 제463조, 제480조

제2항, 제635조에 의한 약관사용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배제되거나 제한되는 내용의 조항.

12. (계속적 채무관계의 존속기간) 약관사용자가 물품의 인도나 노무의 제공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 a) 계약상대방을 2년 이상 구속하는 계약존속기간,
 - b) 계약상대방을 구속하는 계약관계의 목시적 연장으로서 그 연장기간이 매년 1년 이상인 것, 또는
 - c) 당초 예정되었거나 목시적으로 연장된 계약기간의 만료 전의 3개월 이상 정하여 상대방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해지기간.
13. (계약상대방의 변경) 매매계약, 고용계약 또는 도급계약에 있어서 계약으로 제3자가 약관사용자를 대신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승계하거나 승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규정 ; 다만, 그 규정 중에,
 - a) 제3자가 지명되어 표시되어 있거나,
 - b) 계약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부여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체약 대리인의 책임) 약관사용자가 계약상대방을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대리인에게,
 - a) 이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인 의사표시 없이 대리인 자신의 책임 또는 보장의무(Einstandspflicht)를 부과하거나,
 - b) 무권대리의 경우에 민법 제179조에서 정하는 책임을 초과하는 책임을 부과하는 경우;
15. (입증책임) 약관사용자가 상대방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입증책임을 변경하는, 특히
 - a) 약관사용자의 책임범위 내에 속하는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을 상대방당사자에게 과하거나,

b) 상대방당사자로 하여금 특정한 사실이 진실임을 인정하도록 내용의 조항; 다만 b) 목은 별도로 서명되거나 특별히 분류된 전자서명을 한 수령증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6. (통지 및 의사표시의 형식) 약관사용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행해지는 통지 또는 의사표시가 서면방식보다 엄격한 방식 또는 특별한 도달요건을 결부시킨 조항.

제 2 장 섭외규정

제12조 (삭 제)

제 3 장 쟁송절차

제13조(부작위 및 철회(Widerruf)청구) ① 일반거래약관 중에 본래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무효인 조항 등을 이용하거나 법률행위 거래를 위하여 이를 추천하는 자에 대하여 그 부작위 또는 추천의 경우에는 그 철회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작위청구권 또는 철회청구권은 다음과 같은 곳에 귀속된다.

1. 제22a 조 또는 1998년 5월 19일자 유럽의회 또는 평의회의 소지자보호를 위한 부작위청구권에 관한 EG/27/98 지침(ABI EG Nr. L 166 S.51) 제4조에 의한 유럽위원회 공고에 의해 확인된 자격 있는 단체
2. 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 즉 이러한 사단이 되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종사자의 수가 아주 많으며, 생산품 또는 영업상의 용역이 동종 또는 그와 비슷한 유형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특히 그들의 인적, 물적, 재정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들의 정관에 정해진 영업상의 이익추구가 사실상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시장에서 경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적합해야 한다.

3.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자협회

③ 제2항 제1호에 제기된 사단은 보통거래약관이 상인(제24조 1문 1호)을 상대로 이용되거나, 보통거래약관이 오로지 상인들 간의 이용만을 위하여 추천되고 있는 때에는 부작위 또는 취소의 청구를 하지 못한다.

④ 제1항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무효인 보통거래약관의 이용이나 추천을 안 때로부터 2년, 그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이용 또는 추천의 때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시효 소멸한다.

제14조(관할) ① 본법 제13조에 의한 소에 대하여는 피고가 그 영업소 또는 그것이 없는 때에는 주소를 가지는 관할 구역의 주 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한다. 피고가 국내에 영업소나 주소를 가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 거소의 법원이 관할하고, 그것이 없는 때에는 본법 제9조 내지 제11조에 따라 무효인 보통거래약관 조항이 이용된 관할구역의 법원이 관할한다.

② 주 정부는 소송의 효율적 진행 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명령으로 1개의 주 법원에 대하여 2 이상의 주 법원의 관할 구역에서의 본 법에 의한 소송을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주 정부는 이 권한을 법규명령으로 주 법무부에 위임할 수 있다.

③ 삭 제

③ 일방 당사자가 수소법원에서 인허되지 아니한 변호사로 하여금 대리하게 함으로써 발생한 초과비용은 상환되지 아니한다.

제15조(절차) ① 소송절차에 대하여는 본 법 제23a조, 23b조 그리고 25조에서 달리 정함이 없는 한,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된다.

② 소장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 록

1. 다툼의 대상이 되는 보통거래약관 조항의 문언
2. 그 조항이 다투어지는 법률행위유형의 표시

제16조(공청회) 법원은 소에 대한 결정에 앞서 제13조에 따라 다음의 기관들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소의 대상이 보통거래약관의 대상으로 되는 보험제도인 때에는 관할 보험감독관청 또는
2. 소의 대상이 보통거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이고, 연방금융 감독청이 주택금고법, 투자회사법, 저당은행법 또는 선박저당증서 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하도록 되어 있는 신용제도에 관한 감독청

제17조(판결주문) 법원은 소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문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다툼의 대상이 된 보통거래약관 조항의 문언;
2. 부작위청구권을 발생시키는 보통거래약관 조항이 적용되어서는 아니 될 법률행위 유형의 표시;
3. 동일내용의 보통거래약관 조항의 적용을 금하는 명령;
4. 철회를 명하는 경우에는 추천이 전달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을 주지시켜야 한다는 명령

제18조(공표권) 소가 인용되는 때에는 원고에 대하여 신청에 따라 판결 받은 이용자 또는 추천자의 표시와 함께 주문을 공중에게 알릴 권한이 부여될 수 있되, 연방관보에 실릴 때에는 피고의 비용으로, 기타의 경우에는 자기의 비용으로 한다. 법원은 그 권한의 시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기각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조항의 적용이 금지된 약관사용자는 당해 조항이 당해 법률행위 유형에 있어서 금지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연방법원 또는 연방최고법원합의부의 추후에 결정이 선고되는 방식으로, 그리고 그 판결에 근거한 자기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자기의 사업을 해할 것이라는 사유로써, 민사소송법 제767조에 의한 소의 방법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20조(등록) ①법원은 직권으로 다음 사항을 연방카르텔청에 통지한다.

1. 제13조 또는 제19조에 의하여 계속된 소
2. 제13조 또는 제19조에 의한 소송에서 선고된 판결, 그와 동시에 기판력이 생긴다.
3. 기타의 방법에 의한 소의 종료.

② 연방카르텔청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통지를 등록부에 기입한다.

③ 등록은 등록이 이루어진 해의 말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후에 말소된다. 말소는 말소부기의 등록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며, 기타의 방법에 의한 소의 종료(제1항 제3호)의 말소는 소의 등록의 말소와 함께 행해져야 한다.

④ 현존하는 등록에 관하여는 누구에게든지 신청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 정보는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제1항 제1호에 의한 소에 대하여
 - a) 피 고
 - b) 수소법원 및 사건번호
 - c) 청구취지
2. 제1항 제12호에 의한 판결에 대하여
 - a) 당사자
 - b) 판결법원 및 사건번호
 - c) 판결주문
3. 제1항 제3호에 의한 기타의 방법에 의한 종료에 대하여는 종료의 종류

제21조(판결의 효력) 판결을 받은 약관사용자가 부작위명령에 반하여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관련 계약부분이 부작위판결의 효력을 원용되는 한, 그 보통거래약관인 조항은 무효로 간주된다. 반면 판결을 받은 약관사용자가 그 판결에 대하여 제19조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는 부작위판결의 효력을 원용할 수 없다.

제 4 장 소비자보호 조항적용의 보장 (제22조 - 제22a조)

제22조(소비자보호법에 반하는 관례의 경우 부작위청구) ① 소비자보호에 기여하는 법규(소비자보호법)에 반하여 행위하는 자는 소비자보호라는 이익에 근거하여 그 부작위청구를 당할 수 있다. 이는 본법에 일치하지 않는 보통거래약관의 적용 또는 추천 중에 존재하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유효하지 않다.

② 이 규정의 의미에서 소비자보호법들이란 특히 다음과 같은 법률들인데,

1. 방문판매와 그와 유사한 거래의 철회에 관한 법률
2. 소비자신용법
3. 일시적 주택거주법
4. 원격계약법
5. 원격수업보호법
6. 방송업무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특정 권리와 관리규정의 조화를 위한 1989년 10월 3일자 평의회의 89/552/EWG(ABl. EG Nr. L 298 S. 23) 지침 제10 내지 21조의 국내법전환을 위한 연방과 주법을 조항, 이 조항은 유럽의회와 평의회 97/36/EG (ABl. EG Nr. L 202 S. 60)에 의해 개정되었다.
7. 의약품법률의 해당 규정 및 치료분야에 관한 광고에 관한 법률 Artikel 1의 제3조 내지 제13조.

8. 여행기획에 관한 정보제공의무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 여행계약에 관한 민법전의 규정들.
9. 투자회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와 외국인투자법 제11조와 제15조 등을 말한다.
 - ③ 부작위청구권들은 다음의 경우에 존재한다.
 1. 제22조a 또는 1998년 5월 19일자 유럽의회 또는 평의회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부작위청구권에 관한 EG/27/98 지침(ABI EG Nr. L 166 S.51) 제4조에 의한 유럽위원회 공고에 의해 확인된 자격 있는 단체
 2. 영업상의 이익을 추구하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 즉 이러한 사단이기 위해서는 영업활동 종사자의 수가 아주 많으며, 생산품 또는 영업상의 용역이 동종 또는 그와 비슷한 유형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고, 특히 그들의 인적, 물적, 재정적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그들의 정관에 정해진 영업상의 이익추구가 사실상 실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의 행위와 관련하여 그 시장에서 경쟁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그에 대한 청구권 행사가 적합해야 한다.
 3. 상공회의소 또는 수공업자협회
이들 청구권들은 제1항의 의미에서만 양도될 수 있다.
 - ④ 부작위청구권은 다음의 경우에는 관철할 수 없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청구권의 관철이 남용되는 경우, 즉 특히 위반행위에 대하여 비용상환청구권 또는 권리실행비용이 발생하게 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⑤ 제1항의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다음의 시점으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것은 청구권자가 위반행위를 안 때부터 2년, 그의 지·부지에 관계없이 각각의 위반 행위 시부터 4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하게 된다.
 - ⑥ 본 법 제13조 제4항과 제27a조는 다음과 같은 부당한 경쟁에 대하여도 본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로 집행할 수 있는데, 그 부

당한 경쟁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법규위임과 기타 본 법의 2절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조의 a(자격 있는 단체의 유럽위원회에의 등록절차) ① 연방행정관청이 자격 있는 단체 목록을 작성한다. 이 목록은 매년 1월 1일의 상황을 연방공보에 공고하고, 98/27/EG 4조 2항의 지침에 따른 지시에 따라 유럽위원회에 송부된다.

② 계몽과 상담을 통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함을 정관상의 사업으로 삼고, 이러한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사단들 또는 최소한 75인의 자연인을 그 구성원으로 하는 있는 권리능력 있는 사단으로 그 목록에 등록된다. 소비자센터와 다른 소비자단체가 공공적인 수단으로 장려되는 경우에 이 전제조건이 충족되었음은 의심의 여지없이 추정된다. 목록에의 기록은 명칭, 주소, 등록법원, 등록번호 그리고 정관상의 목적의 기재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하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래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된다.

1. 사단이 이러한 사항을 신청하거나,
2. 등기를 위한 요건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없어진 경우.

③ 등기결정은 신청자에게의 통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연방행정청은 단체들에게 신청으로 그들의 목록에의 등재에 관한 증서를 수여한다. 어떤 단체의 등기가 목록으로부터 삭제되었다는 사실에 법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신청으로 그것에 대한 증서를 발행한다.

④ 등기된 단체의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전제조건이 존재에 대하여 발생하는 의문이 소송 중에 나오는 경우에는, 법원은 연방행정청에 대하여 그 등기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정 때까지 심리를 중단할 수 있다.

⑤ 본 규정에 의한 과제의 처리 중에는 연방행정관청은 법무부의 전문감독 하에 있게 된다.

제 5 장 적용범위

제23조(물적 적용범위) ① 본법은 노동법, 상속법, 친족법 및 사회법의 분야에 있어서의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또한 이하의 사항에서도 적용되지 않는데, 그것은

1. 제2조는 관할 교통관청의 인가를 얻거나 국제협정에 기하여 제정된 철도의 운영세칙 및 여객운송법에 따라 인가된 전차, 버스 및 노선자동차의 운송약관에 대하여

1.a) 제2조는 독일연방채신청 특별재산에 기초한 기업의 수수료를 포함한 보통거래의 약관에 대하여(단, 당해 보통거래약관의 문언이 독일연방채신 및 통신부의 관보에 공표되었고, 당해 기업의 영업소에 열람을 위해 진열된 경우에 한한다.)

1.b) 제2조는 우정법에 의한 수송유보의 범위 내의 이행에 관한 독일 우정주식회사의 보통거래약관에 대하여(단, 당해 보통거래약관의 문언이 규제관청의 관보에 공표되었고, 독일우정주식회사의 영업소에 열람을 위해 진열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제10조 및 제11조는 전력공급업자 및 가스공급자의 공급망으로부터의 특별수요자에 대한 전기에너지 및 가스의 공급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공급약관이 에너지경제법 제7조에 기하여 제정된 전력공급업자의 저압 송전망으로부터의 전기의 공급에 관한 보통약관 및 가스공급업자의 공급망으로부터의 가스의 공급에 관한 보통약관에 비하여 수용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3. 제11조제7호 및 제8조는 여객운송법에 따라 인가된 전차, 버스 및 노선자동차의 운송약관과 운임 규정에 대하여(그것이 1970년 2월 27일자 전자교통, 버스교통 및 자동차노선교통의 보통운송약관에 관한 규칙에 비하여 여객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4. 제11조제7호는 국가에서 인가된 복권계약 또는 사행계약에 대하여,
 5. 제10조제5호 및 제11조제10호 (f)목은 건설도급규정이 계약기초가 되어 있는 급부에 대하여,
 6. 제11조제12호는 부속물로서 판매된 물건의 공급에 대한 계약, 보험계약 및 저작권, 유사권리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저작권법상의 권리 및 청구권의 보유자와 대행회사 사이의 계약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③ 주택청약저축계약, 보험계약 및 투자회사와 투자자 사이의 법률관계는 제2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표시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도, 관할관청에 의하여 인가된 주택금고, 보험업자 및 투자회사의 보통거래약관의 적용을 받는다.

제24조(인적 적용범위) 제2조, 제10조, 제11조 및 민법시행법 제29a조는, 계약이 상인의 영업활동에 속하는 경우에 상인에 대하여 이용되거나, 공법상의 법인이나 공법상의 특별재산에 대하여 이용되는 보통거래약관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9조는 또한 다음의 경우에 한해서만 적용되는데, 그것은 제10조와 제11조에서 언급된 계약조항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상거래에 적용되는 관습 및 관행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가 행해져야 한다.

제24조의a(소비자계약) 사업자와 일반 소비자 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본 법의 규정들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적용된다.

1. 보통거래약관은 그것이 소비자에 의해 당해 계약에 도입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자가 이를 제안한 것으로 간주된다.
2. 본 법 제5조, 제6조 및 제8조 내지 제11조 및 민법시행법 제29a조는 사전에 작성된 계약조항에 대하여도 또한 적용되는데, 그것은 단지 1회적 적용을 위하여 정해져 있고, 소비자가 미리 작성했지만 그 내용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3. 제9조의 부당한 불이익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체결에 부수하는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6 장 경과규정 및 부칙

제25조(민법의 개정) 민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476조 뒤에 다음의 조문을 삽입한다.

「제476조a 매수인의 해제권 또는 대금감액청구권 대신에 보수청구권이 약정된 때에는 보수의 의무를 지는 매도인은 보수를 위하여 소요되는 제비용 특히 운송비, 여비, 인건비 및 자재비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매매된 물건이 인도된 후에 수령인의 주소나 영업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 이동되어 있는 경우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이동이 물건의 용도에 적합한 사용에 상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633조제2항에 다음과 같은 제2문을 삽입한다. 「제476조a가 준용된다」 현행의 제2문은 제3문으로 본다.

제26조(에너지경제법의 개정) 1975년 3월 10일자 관할완화법(연방법령집 1권 685면) 제18조에 의하여 최종 개정된 1935년 12월 13일자 에너지경제법(제국법령집 1권 1451면) 제7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제1문중 「일반약관 및」의 문언이 삭제된다.
2. 제1문 및 제2문이 제1항으로 된다.
3. 다음과 같은 제2항이 부가된다.
② 연방경제장관은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명령으로 에너지공급기업(제6조제1항)의 일반약관을 모범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경제상은 이에 있어 계약의 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확정하거나, 계약체결, 목적 및 계약의 종료에 관하여 규제하거나, 계약상대방의 권리 및 의

무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있어서는 쌍방의 이익이 적절히 고려되어야 한다. 제1문 및 제2문은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의 예외가 있는 채로 공법상 형성된 공급관계에 준용된다.

제27조(법규명령의 위임) 연방기술경제부는 법무부와 함께 연방상원의 동의를 얻어 법규명령으로 수도 및 열의 공급 및 하수처리에 관한 일반약관, 그리고 그 수수료에 관한 범위규정을 양측 이익의 적당한 고려 하에 정할 수 있다.

1. 계약의 제 규정을 일률적으로 확정,
2. 계약체결, 목적 및 계약의 종료에 관한 규제
3. 계약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확정

제1문은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은 예외와 함께 공법상 형성된 공급과 처리관계에 관한 조항에 준용한다.

제27조의a(주택건축시 분할상환) 법무부는 연방기술경제부와 함께 연방상원의 동의 필요 없이, 또한 민법 제632a조와 달라도 주택건축 또는 그와 유사한 건조물의 건축을 그 대상으로 하는 도급 계약 시에 어떠한 일부변제를 요구할 것인지, 특히 몇 번의 분할을 합의할 수 있는가의 여부, 이 경우 어느 조합이 전체 총액에서 몇 퍼센트로 할당될 수 있는지의 여부, 소유권 완성을 위한 계약상의 의무를 위하여 어떠한 할부를 책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주문자에게 어떤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결정권한을 위임받는다.

제28조(경과규정) ① 본법은 제2조를 제외하고는 그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제9조는 계약이 아직 청산되지 아니한 한, 상품의 정기적 공급, 서비스나 용역의 정기적 제공이나 물건의 사용권 양여에 관하여 본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 ③ 수도 및 열의 공급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본법의 규정은 시행 후 3년이 지나서야 적용된다.
- ④ 법률의 제27조에 근거하여 1999년 8월 14일 전에 발효된 법규명령은 그 날 이후의 그 법규명령에 대하여 제27조의 기준에 의거하여 개정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
- ⑤ 2000년 12월 31일 만료 시까지 본법의 제13조와 제22조 및 부당경쟁에 대한 제13조 제2항 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권들은 목록에의 등기신청에 적당하지 않아서 제22a조에 의하여 등기되지 않은 소비자연합에도 인정된다. 2000년 1월 1일 전에 내려진 법률적 효력 있는 고등법원의 판결로 소송권한이 인정된 소비자연합의 경우에는 목록에의 등기가 가능하다.

제29조(소비자불만) (1) 민법 제675a조 내지 제676g조의 적용 시에 발생하는 쟁송의 경우에, 그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권리의 유무에 관계없이 독일 연방은행에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청할 수 있다. 독일 연방은행은 여러 개의 중재소를 설치할 수 있다. 연방은행은 어느 지점에 중재소를 설치할 것인지를 정한다.

(2) 법무부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되는 장소에 관한 자세한 사항을 법규명령을 통해서 아래의 원칙에 따라서 규정한다.

1. 중재소의 독립성을 통하여 중립적 행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2. 절차규정들은 관심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 접근이 가능해야 한다.
 3. 그 이해관계인은 사실들과 가치평가를 진술할 수 있어야 하며, 법적인 공청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4. 그 절차는 권리의 실현에 그 목적방향이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이 법규명령은 1999년 10월 31일 종료 시까지 공포되어야 한다. 그 법규명령은 신용기관법 제51조를 참조하여 절차비용의 분배에 관한 신용기관의 의무를 규정한다.

부 록

(3) 법무부는 기술경제부와 함께 연방상원의 동의에 의한 법규명령으로 제1항에 의거한 소송중재를 그 문제의 해결에 적합한 하나 또는 수 개의 중재소에 이관할 권한이 있다.

제30조(시행) 본법은 제2문을 제하고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4조제2항, 제26조 및 제27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3조 2항 1a호 1b호는 2002년 12월 31일의 만료로 효력을 잃는다.

부 록 Ⅲ 일본의 소비자계약법(消費者契約法)

최종개정: 2013년 6월 28일 법률 제70호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이 법률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정보의 질 및 양과 교섭력의 격차에 비추어 보아 사업자의 일정한 행위에 의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곤란한 경우에 대하여 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 그 밖에 소비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하게 되는 조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하는 외에, 소비자의 피해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적격소비자단체가 사업자등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하고, 이로써 국민생활의 안정 향상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소비자」란 개인(사업으로 또는 사업을 위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자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이 법률(제43조제2항제2호를 제외한다)에서 「사업자」란 법인 그 밖의 단체 및 사업으로 또는 사업을 위해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의 개인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소비자계약」이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④ 이 법률에서 「적격소비자단체」란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데 필요한 적격

성을 가진 법인인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1968년 법률 제78호) 제8조의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제1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 제 3 조**(사업자 및 소비자의 노력) ① 사업자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소비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소비자계약의 내용이 소비자에게 있어 명확하고 평이한 것이 되도록 배려함과 동시에,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는데 있어서는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소비자계약의 내용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소비자는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는 사업자로부터 제공된 정보를 활용하고, 소비자의 권리의무 그 밖에 소비자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제 2 장 소비자계약

제 1 절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 제 4 조**(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①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해 권유를 하는 때에 그 소비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써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오인을 하고, 그로 인해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중요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리는 것. 알려진 내용이 사실이라는 오인
 2. 물품, 권리, 용역, 그 밖에 해당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에 관하여 장래의 그 가액, 장래에 그 소비자가 수취하여야 하는 금액 그 밖에 장래에 변동이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것. 그 제공된 단정적 판단의 내용이 확실하다는 오인

②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하는 때에, 그 소비자에 대하여 어떤 중요사항 또는 그 중요사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알리고, 그 중요사항에 대하여 그 소비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사실(고지에 의해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소비자가 통상 생각하는 것에 한한다)을 고의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오인하고, 그로 인해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업자가 소비자에 대하여 그 사실을 알리고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소비자가 이를 거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비자는 사업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하는 때에, 그 소비자에 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함으로 인해 난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해당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그 사업자에 대하여 소비자가 자신의 주거 또는 그 사업을 하고 있는 장소에서 퇴거하여야 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퇴거하지 아니하는 것
2. 그 사업자가 해당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고 있는 장소에서 그 소비자가 퇴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에서 소비자를 퇴거시키지 아니하는 것

④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중요사항」이란 소비자계약에 관한 다음의 사항으로서 소비자가 그 소비자계약을 체결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에 통상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1. 물품, 권리, 용역, 그 밖에 그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의 질, 용도, 그 밖의 내용

2. 물품, 권리, 용역, 그 밖에 그 소비자계약의 목적이 되는 것의
대가, 그 밖의 거래조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
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제 5 조(매개의 위탁을 받은 제3자 및 대리인) ① 전조의 규정은 사업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그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매개하는 것에 대한 위탁(이하 이 항에서 「위탁」이
라 줄여 말한다)을 하고, 그 위탁을 받은 제3자[그 제3자로부터 위
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수탁자등」이라 한다]가 소비자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대하여 준용한다. 이 경
우에,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그 사업자」는 「그 사업자 또는 다음
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수탁자등」으로 대체하도록 한다.

②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한 소비자의 대리인[복대리인(둘 이상의
단계에 걸쳐 복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를 포함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사업자의 대리인 및 수탁자등의 대리인은 전조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전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조 및 제7조에서 같다)
의 적용에 대해서는 각각 소비자, 사업자 및 수탁자등으로 간주한다.

제 6 조(해석규정)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에 대한 「민법」(1896년 법률 제89호)
제96조의 적용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제 7 조(취소권의 행사기간등) ①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취
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부터 6개월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
효로써 소멸한다. 해당 소비자계약의 체결 시부터 5년이 경과한 때
에도 또한 같다.

② 「회사법」(2005년 법률 제86호)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기 또는 강박을 이유로 하여 취소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 또는 기금의 출연이 소비자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 또는 기금의 출연에 대한 의사표시에 대해서는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5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이를 취소할 수 없다.

제 2 절 소비자계약 조항의 무효

제 8 조(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의 무효) ①다음의 소비자계약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사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
2. 사업자의 채무불이행(해당 사업자, 그 대표자 또는 그가 사용하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한한다)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는 조항
3.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채무이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해당 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규정에 따른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
4. 소비자계약에서 사업자의 채무이행에 있어서 이루어진 해당 사업자의 불법행위(해당 사업자, 그 대표자 또는 그가 사용하는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에 한한다)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민법」규정에 따른 책임의 일부를 면제하는 조항
5. 소비자계약이 유상계약인 경우에, 그 소비자계약의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때(그 소비자계약이 청부계약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계약의 작업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 다음 항에서 같다)에 그 하자로 인해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사업자 책임의 전부를 면제하는 조항

② 전항 제5호의 조항에 대해서는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같은 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그 소비자계약에서 계약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때에 그 사업자가 하자가 없는 물건으로 이를 대신할 책임 또는 그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
2. 해당 소비자와 사업자의 위탁을 받은 다른 사업자 사이의 계약 또는 해당사업자와 다른 사업자 사이에 해당 소비자를 위해 하는 계약으로 그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앞서서 또는 이와 동시에 체결된 것에서 그 소비자계약의 목적물에 숨겨진 하자가 있는 때에 그 다른 사업자가 하자로 인해 해당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고, 하자 없는 물건으로 이를 대신할 책임을 지거나 하자를 보수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경우

제 9 조(소비자가 지불하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조항등의 무효) 다음 각 호의 소비자계약 조항은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무효로 한다.

1. 그 소비자계약의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약으로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해당 조항에서 설정된 해제의 사유, 시기 등의 구분에 따라 그 소비자계약과 같은 종류의 소비자계약의 해제에 따라 그 사업자에게 발생하는 평균적인 손해액을 초과하는 것 : 그 초과하는 부분
2. 그 소비자계약에 따라 지불하여야 하는 금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비자가 지불기일(지불회수가 2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지불기일.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에 손해배상액을 예정하거나 위약금을 정하는 조항으로서, 이를 합산한 금액이 지불기일의 다음 날부터 이를 지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그 일수에 따라서 그 지불기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에서 그 지불기일에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 중 이미 지불된 금액을 공

제한 금액에 연 14.6%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것: 그 초과하는 부분

제10조(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조항의 무효) 「민법」, 「상법」(1899년 법률 제48호), 그 밖의 법률의 공공질서에 관계하지 아니하는 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비교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의무를 가중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으로서, 「민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본원칙에 반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것은 무효로 한다.

제 3 절 보 칙

제11조 (다른 법률의 적용) ①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비자계약 조항의 효력에 대해서는 이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민법」 및 「상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의 취소 및 소비자계약 조항의 효력에 대하여 「민법」 및 「상법」이외에 다른 법률에 별도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 장 금지청구

제 1 절 금지청구권

제12조(금지청구권) ①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자, 수탁자등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등의 대리인(이하 「사업자등」이라 총칭한다)이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한 권유를 하는 때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행위(같은 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행위에 있어서는 같은 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등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예방 또는 그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및 「상법」이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그 행위를 이유로 하여 해당 소비자계약을 취소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적격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자가 소비자계약의 체결에 대하여 권유를 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에 대하여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각호에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각 호의 자에 대한 시정지시 또는 교사의 정지,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탁자등 : 해당 수탁자등에 대하여 위탁(둘 이상의 단계에 걸친 위탁을 포함한다)을 한 사업자 또는 다른 수탁자등
2. 사업자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등의 대리인 : 그 대리인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수탁자등 또는 이들의 다른 대리인

③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자 또는 그 대리인이 소비자계약을 체결 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제8조제1항제5호의 소비자계약 조항에 있어서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음 항에서 같다)을 포함하는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자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그 행위의 정지·예방 또는 그 행위에 제공한 물건의 폐기 또는 제거,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민법」 및 「상법」이외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그 소비자계약의 조항이 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소비자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와의 사이에서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서 규정하는 소비자계약의 조항을 포함하는 소비자계약의 청약 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해당 대리인을 자기의 대리인으로 하는 사업자 또는 다른 대리인에 대하여 해당 대리인에 대한 시정지시 또는 교사의 정지, 그 밖에 그 행위의 정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항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2(금지청구의 제한) ① 전조 또는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1962년 법률 제134호) 제10조 또는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1976년 법률 제57호) 제58조의18부터 제58조의24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구(이하 「금지청구」라 한다)는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없다.

1. 해당 적격소비자단체 또는 제3자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또는 그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다른 적격소비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등(소송과 화해신청에 관한 절차, 조정 및 중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 이미 확정판결등(확정판결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하고,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것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존재하는 경우에 청구의 내용 및 상대방이 동일한 경우. 다만,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등의 절차에 관하여 다음 조 제1항의 인정이 제34조제1항 제4호의 사유로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호의 사유가 있었다는 취지가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소를 각하한 확정판결

나. 전호의 경우에 해당한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금지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 및 중재판단

다. 금지청구를 할 권리(이하 「금지청구권」이라 한다)의 부존재 또는 금지청구권에 관련된 채무부존재확인청구(제24조에서 「금지청구권부존재등확인청구」라 한다)를 기각한 확정판결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

② 전항 제2호 본문은 그 확정판결에 관한 소송의 구두변론 종결 후 또는 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의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에 기인하여 같은 호 본문에서 열거하는 경우의 금지청구를 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절 적격소비자단체

제 1 관 적격소비자단체의 인정등

제13조(적격소비자단체의 인정) ① 금지청구관계업무(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업무와 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정보수집과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금지청구권의 행사결과에 관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전항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내각총리대신에게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의 신청을 한 자가 다음에서 열거하는 요건 모두에 적합한 때에 한하여 제1항의 인정을 할 수 있다.

1.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1998년 법률 제7호) 제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또는 일반사단 또는 일반재단법인일 것
2. 소비생활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과 소비자의 피해방지 및 구제를 위한 활동, 그 밖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실제로 그 활동을 상당 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적정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될 것

3. 금지청구관계업무의 실시에 관한 조직, 금지청구관계업무의 실시 방법,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정보의 관리 및 비밀의 유지방법, 그 밖에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 및 업무규정이 적절하게 정비되어 있을 것
4. 그 이사에 관하여 다음의 요건에 적합한 것일 것
 - 가. 금지청구관계업무의 집행을 결정하는 기관으로서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가 설치되어 있고, 정관에서 정하는 그 결정방법이 다음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
 - (1) 그 이사회회의 결의가 이사의 과반수 또는 이를 상회하는 비율 이상의 다수결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을 것
 - (2) 제41조제1항에 따른 금지청구, 금지청구에 관한 소제기 그 밖에 금지청구관계업무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결정이 이사 그 밖의 자에게 위임되어 있지 아니할 것
 - 나. 이사의 구성이 다음의 (1) 또는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 것. 이 경우에 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자는 다음의 (1) 또는 (2)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1) 이사의 수에서 차지하는 특정사업자(그 사업자와의 사이에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관계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관계자(그 사업자 및 그 임원 또는 직원인 자,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2)에서 같다)수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었을 것
 - (2) 이사의 수에서 차지하는 동일한 업종(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구분을 말한다)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의 관계자 수의 비율이 2분의 1을 넘었을 것

5. 금지청구의 여부 및 그 내용에 대한 검토를 하는 부문에서 다음가 및 나의 자(이하 「전문위원」이라 총칭한다)가 함께 그 전문적인 지식경험에 근거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체제가 정비되고 있을 것, 그 밖에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체제에 비추어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다고 인정될 것
 - 가. 소비생활에 관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민원에 관한 상담(제40조제1항에서 「소비생활상담」이라 한다), 그 밖에 소비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자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 나. 변호사, 사법서사, 그 밖에 법률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경험이 있는 자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자
6.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리적 기초를 가지고 있을 것
7. 금지청구관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하는 것에 의해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 ④ 전항 제3호의 업무규정에는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실시방법, 금지청구관계 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정보의 관리 및 비밀의 유지방법,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업무규정에서 정하는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실시방법에는 같은 항 제5호의 검토를 하는 부문에서 전문위원으로부터의 조언 또는 의견의 청취에 관한 조치 및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이 금지청구에 관련된 상대방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의 조치, 그 밖에 업무의 공정한 실시의 확보에 관한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1. 이 법률 그 밖에 소비자의 이익옹호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이러한 법률에 근거한 명령의 규정 또는 이들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2.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의해 제1항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있었던 사실의 인정이 이루어지고, 그 취소 또는 인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
3.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제6호에서 규정하는 폭력단원(이하 이 호에서 「폭력단원」이라 한다) 또는 폭력단원이 아니게 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다음 호 및 제6호 다에서 「폭력단원등」이라 한다)가 그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4. 폭력단원등을 그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그 업무의 보조자로서 사용할 우려가 있는 법인
5. 정치단체[「정치자금규정법」(1948년 법률 제194호)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6. 임원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 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해지거나 이 법률, 그 밖에 소비자의 이익옹호에 관한 법률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 또는 이들 법률에 근거한 명령규정 또는 이들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하여 벌금형에 처해져,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형 집행을 받지 않게 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나. 적격소비자단체가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제1항의 인정이 취소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있었다는 인정이 이루어진 경우에 그 취소 또는 인

정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적격 소비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
로 그 취소 또는 인정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폭력단원등

제14조(인정신청) ① 전조 제2항의 신청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
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고자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3. 전 2호의 것 외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

② 전항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 관
2.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옹호를 위한 활동을 상당기간에 거
쳐 계속하여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3.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한 업무계획서
4.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한 체제가 정비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5. 업무규정
6. 임원, 직원 및 전문위원에 관한 다음의 서류
가. 성명, 직위 및 직업을 기재한 서류
나. 주소, 약력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전조 제3항제1호의 법인의 사원에 대하여 그 수 및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의 단체의 구별(사원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수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8. 최근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그 밖에 경
리적 기초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9. 전조 제5항 각 호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서약하는
서면

10. 금지청구관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11.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서류

제15조(인정신청에 관한 공고 및 공람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전조에 따른 인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과 같은 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공고함과 동시에 같은 조 제2항 각 호(제6호나, 제9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를 공고일 부터 2주일 동안 공중의 공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제13조제1항의 인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유의 유무에 대하여 경제산업대신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전조에 따른 인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 제13조제5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다에 해당한다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찰청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6조(인정의 공시 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제13조제1항의 인정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의 명칭 및 주소,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인정을 한 날을 공시함과 동시에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적격소비자단체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소비자단체라는 사실을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는 사무소에 보기 쉽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소비자단체가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적격소비단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 업무에 관하여 적격소비자단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인정의 유효기간 등) ① 제13조제1항 인정의 유효기간은 그 인정일부터 기산하여 3년으로 한다.

② 전항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하여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고자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아야 한다.

③ 전항 유효기간의 갱신을 받고자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는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사이에(이하 이 항에서 「갱신신청기간」이라 한다) 내각총리대신에게 유효기간의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갱신신청기간에 그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1항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의 인정은 같은 항의 유효기간만료 후에도 그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갖는다.

⑤ 전항의 경우에 제2항의 유효기간 갱신이 이루어진 때에는 그 인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인정의 유효기간 만료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한다.

⑥ 제13조(제1항 및 제5항제2호를 제외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전조 제1항은 제2항의 유효기간 갱신에 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호의 서류에 대해서는 이미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되어 있는 그 서류의 내용에 변경이 없는 때에는 그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갱신신고) 적격소비자단체는 제14조제1항 각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제2호 및 제11호를 제외한다)의 서류에 기재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기재한 신고서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변경이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조(합병의 신고 및 인가 등)** ①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이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과 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② 전항에 따라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이 적격소비자단체가 아닌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합병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의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의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사이에(이하 이 항에서 「인가신청기간」이라 한다) 내각총리대신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가신청기간에 그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합병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그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은 그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합병으로 인해 소멸한 법인의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⑥ 제13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3항의 인가에 대하여 준용한다.
- ⑦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아닌 법인과 합병을 하는 경우에 제4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내각총리대신은 제2항 또는 전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양도의 신고 및 인가 등) ①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이 다른 적격소비단체인 법인에 대하여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 그 양도를 받은 법인은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양도를 한 법인의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전항에 따라 그 양도한 법인의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한 법인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이 적격소비자단체가 아닌 법인에 대하여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를 받은 법인은 그 양도에 대하여 내각총리대신의 인가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양도를 한 법인의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전항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양도일의 90일 전부터 60일까지 사이에(이하 이 항에서 「인가신청기간」이라 한다) 내각총리대신에게 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인가신청기간에 그 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전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양도일까지 신청에 대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양도를 받은 법인은 처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이 법률 규정에 따른 양도를 한 법인의 적격소비자단체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제13조(제1항을 제외한다),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제1항은 제3항의 인가에 대하여 준용한다.

⑦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아닌 법인에 대하여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제4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양도일까지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⑧ 내각총리대신은 제2항 또는 전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21조(해산의 신고 등) ① 적격소비자단체가 다음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내각총리대신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파산절차개시결정에 따라 해산한 경우 : 파산관재인
2. 합병 및 파산절차개시결정 이외의 이유로 인해 해산한 경우 : 청산인
3.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폐지한 경우 : 법인의 대표자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2조(인정의 실효)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인정을 그 효력을 잃는다.

1. 제13조제1항 인가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제17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갱신거부처분이 이루어진 때)
2.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아닌 법인과 합병을 한 경우에 그 합병이 제19조제3항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효력이 발생한 때(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의 불인가처분이 이루어진 때)
3. 적격소비자단체인 법인이 적격소비자단체가 아닌 법인에 대하여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한 사업의 전부를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가 제20조제3항의 인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때(같은 조 제5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불인가처분이 이루어진 때)

4. 적격소비자단체가 전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제 2 관 금지청구관계업무등

제23조(금지청구권의 행사 등) ① 적격소비자단체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금지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여야 한다.

② 적격소비자단체는 금지청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적격소비자단체는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금지청구권을 행사하는 외에, 금지청구관계업무에 대하여 서로 연대하면서 협력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적격소비자단체는 다음의 경우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에 통지함과 동시에, 그 사실 및 내용,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내각총리대신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해당 적격소비자단체가 그 통지 및 보고를 대신하여 모든 적격소비자단체 및 내각총리대신이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는 방법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강구한 때에는 그 통지 및 보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1. 제41조제1항(같은 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금지청구를 한 때
2. 전호의 경우 외에, 재판 외에서 금지청구를 한 때
3. 금지청구에 관한 소의 제기(화해신청, 조정신청 또는 중재합의를 포함한다) 또는 가처분명령의 신청이 있는 때
4.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의 언도(조정의 성립, 조정을 대신한 결정의 고지 또는 중재판단을 포함한다) 또는 금지청구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고지된 때

5. 전호의 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조정을 대신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중재판단의 취소신청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호의 결정에 대한 불복신청이 있는 때
 6. 제4호의 판결(조정을 대신하는 결정 또는 중재판단을 포함한다) 또는 같은 호의 결정이 확정된 때
 7. 금지청구에 관한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한 때
 8. 전 2호의 경우 외에,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화해신청에 관한 절차, 조정절차 또는 중재절차를 포함한다) 또는 금지청구에 관한 가처분명령에 관한 절차가 종료한 때
 9. 금지청구에 관한 재판외의 화해가 성립한 때, 그 밖에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과의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진 때 또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
 10. 금지청구에 관하여 청구의 포기, 화해, 상소의 취하,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관한 행위로서 그에 의해 확정판결 및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이 존재하게 되는 것을 하고자 하는 때
 11. 그 밖에 금지청구에 관하여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절차에 관한 행위가 이루어진 때
- ⑤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모든 적격소비자단체와 내각총리대신 및 경제산업대신이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여 동일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조치,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다른 적격소비자단체 및 경제산업대신에게 그 보고일시 및 개요, 그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전달하여야 한다.
- ⑥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제1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확정판결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확정판결등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포기할 수 없다.

제24조(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정보의 처리) 적격소비자단체는 금지청구권의 행사(금지청구권부존재등확인청구에 관한 소송을 포함한다. 제28조에서 같다)에 관하여 소비자로부터 수집한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정보를 그 상대방, 그 밖에 제3자가 그 피해에 관한 소비자를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전에 해당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5조(비밀유지의무) 적격소비자단체의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 또는 이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명등의 명시)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관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그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상대방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의 명칭, 자기의 성명 및 적격소비자단체에서의 직위 또는 지위,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상대방에게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27조(판결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적격소비자단체는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소비자에 대하여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및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또는 재판외의 화해의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재산상 이익의 수령금지 등) ① 적격소비자단체는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기부금, 찬조금,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및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또는 「민사소송법」(1996년 법률 제109호) 제73조제1항의 결정에 의한 소송비용(화해비용, 조정절차비용 및 중재절차비용을 포함한다)을 부담하게 된 상대방으로부터 그 소송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환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2.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에 따라서 「민사집행법」(1979년 법률 제4호) 제172조제1항에 따라 명해진 금전의 지불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3. 금지청구에 관한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의 집행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상환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4.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약정된 위약금의 지불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
- ② 적격소비자단체의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은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에 관련된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기부금, 찬조금,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③ 적격소비자단체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은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에 관련된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기부금, 찬조금,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전, 재산상의 이익을 제3자에게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전 3항에서 규정하는 금지청구에 관련된 상대방으로부터 그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받거나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되는 재산상의 이익에는 그 상대방이 금지청구권의 행사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받거나 받게 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⑤ 적격소비자단체는 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은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금전을 적립하여 이를 금지청구관계업무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

⑥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정관에서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폐지하거나 제13조제1항 인정의 실효(금지청구관계업무를 폐지에 따른 것을 제외한다) 또는 취소에 의해 금지청구관계업무를 종료한 경우에 적립금(전항에 따라 적립된 금액을 말한다)에 잔여가 있는 때에는 그 잔여에 상당하는 금전을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제35조에 따라 금지청구권을 승계한 적격소비자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격소비자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에, 없는 때에는 제13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한 소비자단체로서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국가에 귀속된다는 내용을 정하여 두어야 한다.

제29조(업무의 범위 및 구분회계처리) ① 적격소비자단체는 그가 하는 금지청구관계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지청구관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적격소비자단체는 다음의 업무에 관한 회계처리를 각각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1. 금지청구관계업무
2.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옹호를 위한 활동에 관한 업무(전호의 업무를 제외한다)
3. 전 2호의 업무 이외의 업무

제 3 관 감 독

제30조(장부서류의 작성 및 보존) 적격소비자단체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 및 회계처리에 관한 장부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31조(재무제표등의 작성, 비치, 열람등 및 제출 등) ① 적격소비자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및 사업보고서[이들의 작성을 대신하여 전자

적 기록(전자적 방식, 자기적 방식 그 밖에 인간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작성된 기록으로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용으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작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 전자적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적격소비자단체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사업 연도, 그 금지청구관계업무, 그 밖의 업무가 이 법률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그 업무수행상황의 조사에 필요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가 하는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적격소비자단체의 사무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정 관
2. 업무규정
3. 임직원등명부(임원, 직원 및 전문위원의 성명, 직위 및 직업,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명부를 말한다)
4. 적격소비자단체의 사원에 대하여 그 수 및 개인 또는 법인, 그 밖에 단체의 구별(사원이 법인, 그 밖의 단체인 경우에는 그 구성원의 수를 포함한다)을 기재한 서류
5. 재무제표등
6. 수입명세, 그 밖에 자금에 관한 사항, 기부금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회계처리에 관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
7. 금지청구관계업무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 및 개요를 기재한 서류
8. 전항의 조사방법 및 결과가 기재된 조사보고서

④ 누구라도 적격소비자단체의 업무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음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4호의 청구에는 해당 적격소비자단체가 정한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부 록

1. 전항 각 호의 서류가 서면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서면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2. 전호 서면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
3. 전항 각 호의 서류가 전자적 기록으로 작성되어 있는 때에는 그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
4. 전호의 전자적 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에 대한 청구 또는 해당 사항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청구
- ⑤ 적격소비자단체는 전항 각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⑥ 적격소비단체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에서 열거하는 서류를 내각총리대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보고 및 현장검사) ①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회계처리 상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그 직원에게 적격소비자단체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또는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직원이 출입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하는 현장검사의 권한은 범죄수사를 위해 인정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3조(적합명령 및 개선명령) ① 내각총리대신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제1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열거하는 요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않게 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이러한 요건들에 적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적격소비자단체가 제13조제5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기에 이르렀다고 인정하는 때, 적격소비자단체 또는 그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이 금지청구관계업무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률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적격소비자단체 업무의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인적체제의 개선, 위반의 정지, 업무규정의 변경, 그 밖에 업무운영의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인정의 취소등) ① 내각총리대신은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3조제1항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13조제1항의 인정, 제17조제2항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3항의 인가를 받은 때
2. 제13조제3항 각 호 요건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제13조제5항 각 호(제2호를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4. 제1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확정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의 절차에 관하여 그 소송등의 당사자인 적격소비자단체가 금지청구에 관련된 상대방과 공모하여 청구의 포기 또는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을 해하는 내용의 화해를 한 때, 그 밖에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소송등의 수행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때
5. 제1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확정판결등에 관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그 확정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의 당사자인 적

- 격소비자단체가 그 절차를 게을리 한 것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6. 전 각 호에서 열거하는 것 외에, 이 법률 또는 이 법률에 근거한 명령규정 또는 이들 규정에 근거한 처분에 위반한 때
7.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의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이 제28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위반한 때
- ② 적격소비자단체가 제23조제4항에 위반하여 같은 항의 통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금지청구에 관하여 같은 항 제10호에서 규정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전항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③ 제1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인정이 제22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이미 실효하거나 제1항 각 호의 사유(그 확정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의 절차에 관한 같은 항 제4호의 사유를 제외한다)에 의해 이미 취소되어 있는 경우에, 내각총리대신은 그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해 그 확정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의 절차에 관하여 같은 항 제4호의 사유가 있었다고 인정되는 때(전항 규정에 따라 같은 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였던 법인에 대하여 인정을 할 수 있다.
- ④ 전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그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였던 법인은 청산이 종료한 후에도 같은 항 규정의 적용에 대해서는 여전히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⑤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 각호의 사유에 의해 제13조제1항의 인정을 취소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있었다는 인정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취소 또는 인정을 한 날을 공시함과 동시에 해당 적격소비자단체 또는 그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였던 법인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5조(금지청구권의 승계에 관한 지정등) ①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제1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확정판결등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존재하는 경우에 제13조제1항의 인정이 제22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실효하거나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취소된 때 또는 이러한 사유들로 인해 이미 실효하거나 이미 취소되어 있는 때에는 내각총리대신은 해당 적격소비자단체가 가진 금지청구권을 승계하여야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로서 다른 적격소비자단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 따른 지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같은 항의 금지청구권은 그 지정시에(인정의 실효 또는 취소 후에 그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정의 실효 또는 취소시로 소급하여) 그 지정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승계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금지청구권을 승계한 적격소비자단체가 그 금지청구권에 근거한 금지청구를 하는 때에는 제1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은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이하 이 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지정적격소비자단체」라 한다)에 대한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지정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인정이 제22조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실효 혹은 이미 실효하였거나 전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해 취소되는 때
2. 지정적격소비자단체가 승계한 금지청구권을 그 지정 전에 가지고 있던 자(이하 이 조에서 「종전의 적격소비자단체」라 한다) 중, 그 확정판결등의 당사자였던 자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의 인정취소처분, 같은 항의 인정유효기간의 갱신거부처분 또는 합병 또는

사업의 전부양도의 불인가처분(이하 이 조에서 「인정취소처분등」이라 한다)이 취소되거나 인정취소처분 등의 취소 또는 그 무효 또는 부존재의 확인판결(다음 항 제2호에서 「취소판결 등」이라 한다)이 확정된 때

⑤ 내각총리대신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정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적격소비자단체가 승계한 금지청구권에 관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절차에 관하여 해당 지정적격소비자단체가 그 절차를 게을리한 것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의 이익에 현저하게 반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

2. 종전의 적격소비자단체 중 지정적격소비자단체였던 것(그 확정판결등의 당사자였던 것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전항 제1호에 따른 지정취소사유가 된 인정취소처분등이 취소되거나 그 인정취소처분등의 취소판결등이 확정된 때, 또는 전호에 따른 지정의 취소처분이 취소되거나 그 취소처분의 취소판결등이 확정된 때

⑥ 내각총리대신은 제4항제1호 또는 전항 제1호의 사유로 인해 지정적격소비자단체에 관한 지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취소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정적격소비자단체가 승계하고 있던 금지청구권을 승계하여야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로 다른 적격소비자단체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⑦ 내각총리대신은 제4항제2호 또는 제5항제2호의 사유로 인해 지정적격소비자단체에 관한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지정적격소비자단체가 승계하고 있던 금지청구권을 승계하여야 하는 적격소비자단체로 종전의 적격소비자단체를 새로이 지정하여야 한다.

⑧ 전 2호에 따라 새로운 지정이 이루어진 때에는 전 2항의 금지청구권은 그 새로운 지정시에[종전의 지정취소 후에 새로이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종전의 지정취소시(종전의 적격소비자단체에 관한

제13조제1항의 인정의 실효 후에 종전의 지정취소 및 새로운 지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인정의 실효시에 소급하여] 새로운 지정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가 승계한다.

⑨ 제3항은 전항의 경우에 같은 항의 규정에 따라 그 금지청구권을 승계한 적격소비자단체가 그 금지청구권에 근거한 금지청구를 하는 때에 대하여 준용한다.

⑩ 내각총리대신은 제1항,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지정을 한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 및 지정일을 공시함과 동시에, 지정을 받은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 4 관 보 칙

제36조(규율) 적격소비자단체는 이를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7조(관공청등에의 협력의뢰) 내각총리대신은 이 법률의 실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청, 공공단체, 그 밖의 자에게 조회하거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제38조(내각총리대신에 대한 의견) 다음 각 호의 자는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각각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내각총리대신이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적당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내각총리대신에 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1. 경제산업대신 : 제13조제3항제2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유 또는 제34조제1항제4호의 사유

2. 경찰청장관 : 제13조제5항제3호, 제4호 또는 제6호 다에 해당하는 사유

제39조(판결등에 관한 정보의 공표) ① 내각총리대신은 소비자의 피해 방지 및 구제를 위해 적격소비자단체로부터 제23조제4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인터넷의 이용,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신속하게 금지청구에 대한 판결(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 및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다) 또는 재판외의 화해의 개요,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의 명칭 및 그 금지청구권에 관련된 상대방의 성명 또는 명칭,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 내각총리대신은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한 정보를 널리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인터넷의 이용,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소비자단체의 명칭 및 주소와 금지청구관계업무를 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필요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③ 내각총리대신은 독립행정법인국민생활센터에 전 2항의 정보공표에 관한 업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적격소비자단체에의 협력등) ① 독립행정법인국민생활센터 및 지방공공단체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격소비자단체의 요구에 응하여 해당 적격소비자단체가 금지청구권을 적절하게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에서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하여 소비생활상담에 관한 정보로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것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 받은 적격소비자단체는 그 정보를 금지청구권을 적절한 행사용으로 제공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절 소송절차등의 특례

제41조(서면에 의한 사전청구) ① 적격소비자단체는 금지청구에 관한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의 피고가 되는 자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의 요지 및 분쟁의 요점, 그 밖에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금지청구를 하고, 서면이 도달한 때부터 1주일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그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피고가 되는 자가 금지청구를 거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청구는 그 청구가 통상 도달하여야 하는 때에 도달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전 2항의 규정은 금지청구에 관한 가처분명령의 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제42조(소송목적의 가액) 금지청구에 관한 소는 소송목적의 가액산정에 대해서 재산권상의 청구가 아닌 청구에 관한 소로 간주한다.

제43조(관 할) ①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해서 「민사소송법」 제5조(제5호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청구에 관한 소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한 지역을 관할하는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

1. 제12조 :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등의 행위
2.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10조 : 같은 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의 행위
3. 「특정상거래에 관한 법률」 제58조의18부터 제58조의24까지 : 해당 규정에 의한 그 금지청구에 관한 상대방인 판매업자, 역무제공사업자, 총괄자, 권유자, 일반연쇄판매업자, 관련상품의 판매를 한 자, 업무제공유인판매업을 행한 자 또는 구입자(같은 법 제58조의21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청구에 관한 소가 있는 때에는 권유자)의 행위

제44조(이 송) 법원은 금지청구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로서 다른 법원에 동일 또는 같은 종류의 행위의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주소 또는 소재지, 심문을 받아야 하는 증인의 주소, 쟁점 또는 증거의 공통성,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에 의해 또는 직권으로 그 소에 관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역의 법원 또는 다른 관할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45조(변론등의 병합) ① 청구의 내용 및 상대방이 동일한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이 동일한 제1심법원 또는 항소법원에 여러 개 동시에 계속 중인 때에는 그 변론 및 재판은 병합하여야 한다. 다만, 심리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과 변론 및 재판을 병합하여 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그 내용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46조(소송절차의 중지) ① 내각총리대신은 현재 계속 중인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에 대해 이미 다른 적격소비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제12조의2제1항제2호 본문의 확정판결등이 존재하는 경우에, 해당 다른 적격소비자단체에 대해 그 확정판결등에 관한 소송등의 절차에 관하여 제34조제1항제4호의 사유가 있다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같은 호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제13조제1항의 인정취소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른 인정(다음 항에서 「인정의취소등」이라 한다)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 상당한 기간을 요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내각부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수소법원(受訴裁判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사실 및 판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내각총리대신은 전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 통지에 관련된 기간 내에 인정의 취소등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수소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소법원은 그 통지에 관련된 기간이 경과하는 날까지(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전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제47조(간접강제 지불액의 산정) 금지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제 17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 같은 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전 액을 정하는데 있어서는 집행법원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불특정다수의 소비자가 받을 불이익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 4 장 잡 칙

제48조(적용제외) 이 법률의 규정은 노동계약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8조의2(권한의 위임) 내각총리대신은 전장의 규정에 의한 권한(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소비자청장관에게 위임한다.

제 5 장 별 칙

제49조 ① 적격소비자단체의 임원, 직원 또는 전문위원이 적격소비자단체의 금지청구에 관련된 상대방으로부터 기부금, 찬조금,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해당 적격소비자단체에서 그 금지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행사하지 아니하였던 것, 그 금지청구권을 포기하거나 포기하였던 것, 그 상대방과의 사이에 금지청구에 관한 화해를 하거나 하였던 것 또는 금지청구에 관한 소송, 그 밖의 절차를 다른 사유로 인해 종료시키거나 종료시켰던 것에 대한 보수로서 금전,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받거나 제3자(해당 적격소비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 받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이익을 공여한 자도 제1항과 같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범인 또는 사정을 알았던 제3자가 받은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④ 제1항의 죄는 일본 국외에서 이러한 죄를 범한 자에게도 적용한다.

⑤ 제2항의 죄는 「형법」(1907년 법률 제45호) 제2조의 예에 따른다.

제50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에 의해 제13조제1항의 인정, 제17조제2항의 유효기간의 갱신 또는 제19조제3항 또는 제20조제3항의 인가를 받은 자

2. 제25조에 위반하여 금지청구관계업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제51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제1항(제17조제6항, 제19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신청서 또는 제14조제2항 각 호(제17조제6항, 제19조제6항 및 제20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여 제출한 자
2. 제16조제3항에 위반하여 적격소비자단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문자를 그 명칭 중에 사용하거나 그 업무에 관하여 적격소비자단체라고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
3. 제30조에 위반하여 장부서류의 작성 또는 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장부서류를 작성한 자
4. 제3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하고, 또는 같은 항 규정에 따른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한 자

제52조 ① 법인(법인이 아닌 단체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대표자·관리인 또는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전 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② 법인이 아닌 단체에 대하여 전항 규정의 적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그 소송행위에 대해 법인이 아닌 단체를 대표하는 외에, 법인을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 하는 경우의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엔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록

1. 제16조제2항에 따른 게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게시를 한 자
2. 제18조, 제19조제2항 또는 제7항, 제20조제2항 또는 제7항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3. 제23조제4항 전단에 따른 통지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통지 또는 보고를 한 자
4. 제24조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피해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자
5. 제26조에 위반하여 같은 조의 청구를 거부한 자
6. 제31조제1항에 위반하여 재무제표등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이에 기재 또는 기록하여야 하는 사항을 기재 또는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한 자
7. 제31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같은 항에 따른 조사에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설명을 한 자
8. 제31조제3항에 위반하여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였던 자
9. 제31조제5항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청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제6항에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에 허위의 기재 또는 기록을 하여 제출한 자
11. 제40조제2항에 위반하여 정보를 같은 항에서 정하는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공한 자

부 칙

이 법률은 200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이 법률의 시행 후에 체결된 소비자계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2. 6. 28. 법률 제70호)

제 1 조(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조 및 부칙 제18조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7조(벌금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률의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제18조(정부에의 위임) 이 부칙에 규정한 것 외에 이 법률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경과조치는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19조(검 토) 정부는 이 법률의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법률의 시행 상황을 감안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 관한 검토를 하여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참 고 문 헌

- 권대우, 약관의 부당성 규제, 서강법학3, 서강대학교, 2001.
- 권오승, 한국의 약관규제, 경쟁법연구 제8권, 법문사, 2002.
- _____, 소비자보호법(제5판), 법문사, 2005.09.
- 김대규, 독일 약관규제법의 민법전 편입 및 개성 - 법정책적 논의와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경쟁법연구 제8권, 법문사, 2002.
- _____, 약관편입통제 조항의 기능성 연구 -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비교사법 제11권 제1호, 한국비교사법학회, 2004.
- 김동훈, 약관규제에 관한 최근 판례상의 쟁점, 법학논총 18권, 국민대학교, 2006.
- 김동훈·김용재, 업종별 불공정약관 규제 관련 판례·심결례 연구 및 외국 약관사용 실태조사(용역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5.12.
- 김성천·송민수, 소비자계약법 제정방안 연구(연구보고서), 한국소비자원, 2011.
- 김원기·박수영, 소비자기본법상의 단체소송, 법학논총 제27집 제1호, 전북대학교, 2007.
- 김진환, 약관규제법과 전자약관의 계약편입, 법학연구 제10집, 경상대학교, 2001.
- 박영복, EU사법의 전개, EU연구 제32호,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2.
- 신영수, 표준약관제도에 관한 경쟁법적 고찰, 경제법연구 제7권 제1호, 경제법연구회, 2008.

참 고 문 헌

- 윤방현, 약관의 규제 및 개선방안, 법학논집 제16권 제1호, 한양대학교, 2009.
- 이은영, 약관규제법, 박영사, 1994.
- _____, 서독의 보통거래약관법, 법조 제27집 제3호, 법조협회, 1978.
- 윤용석 외 2인, 약관심사제도 발전방향 연구, 연구보고서, 공정거래위원회, 2007.09.
- 윤진수, 한국법상 약관규제법에 의한 소비자 보호, 민사법학 제62호, 한국민사법학회, 2013.3.
- 이의선·문정숙,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제4권 제1호,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08.
- 이병준, 독일 약관규제법 30년과 우리 법에 대한 시사점, 한국재산법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7.
- _____, 현대 시민사회와 소비자계약법, 집문당, 2013.
- 이병준·김도년, 약관규제법 관련 최근 동향과 입법과제 -단체소송을 통한 약관심사와 표준약관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법조 제58권 제3호, 법조협회, 2009.
- 이준형, 약관규제법·소비자법의 민법과의 통합문제에 대한 관견, 재산법연구 제26권 제2호, 2009.
- 성소미·신광식 편, 공정거래관련 법령의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3.01.
- 전삼현, 독일보통거래약관법과 유럽약관준칙에 관한 소고, 송실대학교 법학논총 제9집, 송실대학교, 1996.
- 장경환, 우리나라 약관규제법의 의의와 성과, 경희법학 제41권 제2호, 경희대학교, 2006.

- 장경환, 약관규제법의 개정론적 고찰 -설명의무, 일반원칙, 의외성의 원칙 및 표준약관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경제법연구 제4권 제1호, 경제법연구회, 2005.
- 장경학,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문제점, 전문가워크숍 자료집, 한국법제연구원, 2008.04.18.
- 최금숙, 약관규제법하에서의 금융기관표준약관의 기한이익상실조항, 법학논집 제8권 제2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4.
- 최완진, 보통거래약관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재산법연구 제5권 제1호, 한국재산법학회, 1988.
- 최병규, 약관규제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영법률 제13권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3.
- _____, 독일 약관규제법 폐지와 변화, 상사법연구 제21권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 _____, 약관규제법의 쟁점과 발전방향, 경제법연구 제4권 제1호, 한국경제법학회, 2005.
- _____, 독일 약관규제법의 최근 동향, 상사법연구 제14집 제1호, 한국상사법학회, 1995.
- 최홍섭·박영준, 약관규제법에 의한 면책약관의 규제 -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 경영법률학회 제15집 제2호, 한국경영법률학회, 2005.
- 하충룡·이유경,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탐색적 연구 -약관에 대한 온라인 소비자 행동을 중심으로,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제9권 제3호,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09.
- 한기정, 영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5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2000.

참 고 문 헌

한기정, 미국 약관규제법에 관한 소고, 법학논집 제6권 제1호, 이화여자대학교, 2001.

한삼인,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의 판례분석, 비교법학 제12권 제2호, 한국비교법학회, 2005.

황진자, 약관규제법 정비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제12호, 한국소비자원, 2009.

內閣府國民生活局, 消費者契約法, 商事法務, 2007.

消費者契約法研究會編, 消費者契約法, 日本流通産業新聞社, 2001.

後勝卷則, 消費者契約の法理論, 홍문당, 평성 14년.

The American Law Institute, Restatement(second) of Contracts, American Law Institute Publishers, 1979.